

국가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0년 수시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0. 8. 31

제 출 문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 연구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0년 8 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석호(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공동연구자	이민아(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공동연구자	강정한(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수시통계품질진단』 요약문

1. 진단의 목적과 필요성

본 진단은 2009년에 수행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하여, 그 결과와 개선방안이 향후 통계생산 및 품질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통계의 신뢰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

2.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개요 및 국내 외 연구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등 3개 유관 부처들이 협력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이민학회를 각각 조사책임기관과 연구기관으로 선정하고 2009년 초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석달 반 동안 진행된 조사이다.
- 국내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조사주체를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계로 나눌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조사는 약 4건,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는 약 8건, 그리고 학계의 조사는 약 4건이었으며 학계에서 시행된 조사들은 표본의 크기가 작다. 반대로 중앙행정기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조사들은 상대적으로 표본 규모가 큰 편이다.
- 대만의 대표적인 이민자 관련 통계로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센서스’가 있다. 대만의 인구센서스는 10년을 주기로 수행되며, 수집된 자료들은 대만의 장기적 국가계획 수립과 사회복지 및 주택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2003년 전 수조사가 실시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2008년 표본조사로 전환되었다.
- 일본의 경우, 총무성 통계국이 ‘인구센서스’에 이민자 관련 항목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에서는 다문화공생 관련 시책으로 ‘다문화공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호주의 경우, 대표적인 이민자 관련 통계로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센서스’가 있다.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센서스는 기본적 사항 즉, 출신국, 언어, 종교, 교육, 복지, 산업, 직업, 주거 등

의 항목들을 포함한다.

⇒ 일본의 사례로부터는 중앙과 지방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조사표 구성을, 대만의 사례로부터는 표본조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호주 사례로부터는 자료의 관리와 공개의 체계화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3. 진단 사업수행범위

- 본 진단팀은 사회조사 자료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체조사오차접근법(total survey error approach)을 품질관리기반,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 실태, 세부 작성별 체계, 수집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 각각에 적용시켜 진단하였다.

4.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부문별 품질진단 결과

1) 통계작성 담당자와의 면담

- 다양한 조사경험과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관리팀은 조사 각 단계의 오차들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조사원교육, 문서나 자료관리의 체계성, 조사관리 상의 비일관적 원칙 적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조사대상자 각각에 대한 접촉여부 및 조사완료결과를 체계적으로 분류해놓지 않았으며 조사표 번역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 사전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조사원 교육은 지역별로 한 차례 이루어졌으며 조사표에 포함된 질문들의 세부내용에 관한 교육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조사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당자는 자료처리 및 자료정선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관리팀의 기준에 의거해 완료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질문한 결과,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검토

와 수정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 상술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가 필요하며, 향후 조사를 위해 조사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체계성 구축이 필요하다.

2)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분석

- 본 진단팀은 통계작성 담당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이 제출한 품질관리기반 현황표의 관련 항목들을 재평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통계작성 담당자의 통계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여성부의 평가보다 낮게 평가했다.

3) 표집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결과

- 통계작성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전수조사의 문제점에 공감하지만 전국 규모의 첫 번째 전수조사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세 개 부처의 협력이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결혼이민자 명부가 부정확하였으나 이번 조사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모집단을 구성하였다고 평가했다.
- 다문화가족 연구전문가들은 전수조사의 문제와 조사문항의 적절성에 문제제기를 하였고 다문화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 설문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이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특성을 모두 담지 못하고 일부분에 치우친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사원 수당 및 가중치 사용 등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다.

4) 세부작성 절차별 체계

-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시행하다보니 응답률과 조사자료의 질이라는 측면에 한계가 있었으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 전수조사이면서 설문내용이 어렵고 길다는 것과 몇몇 질문들은 과연 현재 한국사회 다문화가족의 현실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조사표 번역 과정에서도 질문의 난이도나 정확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흔적들이 포착된다.

- 향후 조사를 위해서 전문 연구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설문내용과 조사 항목에 대한 중장기 계획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 사전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35명이 국적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어서 조사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었다.
- 조사원 교육 및 관리는 조사원 교육의 부실한 준비, 설문 내용 변경, 조사 참여 당위성 및 사명감 고취 실패, 조사원 선정(외국인 조사원 이용)과 과도한 업무량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 조사원 교육과 관리 및 사전조사 등의 조사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기관의 인식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조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수집자료 정확성 점검

- 131,702명에 대한 기록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결과들의 정확성과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가늠할 수 있는 모집단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자료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확보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조사원 기재사항> 자료 획득의 실패는 본 품질진단의 한계로 남게 되었다. 131,702부의 <조사원 기재사항>에 기입된 자료가 그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근거로 가중치를 구축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오류 발생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각종 문서들, 참여연구자 FGI, 연구담당자 면담,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현장조사,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보고체계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현재 공표된 최종 자료에는 아직도 확인 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된다.

⇒ 자료수집과정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 기관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기관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식으로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의 관리가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 조사원의 구성도 조사전문인력으로 단일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6) 통계자료의 서비스 충실성 진단

- 변수 간 내적 일관성을 점검한 결과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교차하였을 때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갖고 있음으로써 내적 일관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조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 체계적인 조사자료 처리가 필요하며 철저한 조사원 기재사항 검토작업과 응답 간 내적 일관성이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공하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이용료 문제가 대두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자료 소개는 조사방법 및 조사과정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조사방법에 대한 요약이나 메타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외부기관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용을 낮추어야 하며 자료제공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7) 조사결과보고서 검토

-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된 각 부분의 기본적인 통계치를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변수 간 내적 일관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각 주제 별 빈도표를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욕구나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문제점 및 발전전략

1)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정의

- 결혼이민자는 현재 국적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으로써 한국인과 결혼한 적이 있거나 현재 혼인상태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문화가족은 그러한 가구성원에 결혼이민자를 포함하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다른 가족성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결혼이민자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및 자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혼용하지 말고 조사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조사주기의 적절성

- 3년 주기의 조사가 실시되면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게 되어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로 변경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묻는 설문과 각 년도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주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전수조사의 적절성

- 전수조사는 많은 조사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사원과 조사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원, 조사관리자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가 조사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수조사의 경우 표본조사에 비해 오히려 응답오차가 커질 수 있다. 특정 집단군에서 응답을 거부하는 경향이 크다면 전수조사가 오히려 선택오차(selection bias)를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다

⇒ 표본조사를 그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나 선결해야 하는 과제는 정확한 표집틀의 확보와 자료수집과정에 대한 엄정한 관리이다. 결혼이민자 모집단조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외국인 조사부분을 추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측정과 대표성

- 체계적인 조사표 작성이 필요하다. 유관 부처들이 협력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상이한 부처의 입장에 의해 심층적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세 개 부처가 협의해 조사 관리와 통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 참여자 및 일반 연구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각 년도 주제선정에서부터 조사방식, 조사처리과정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
- ⇒ 조사표의 주요주제와 항목구성은 한국의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전문연구자들 간의 협의와 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장기 조사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조사 시기 별 핵심조사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5) 조사결과보고서

-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조사과정, 조사원 구성 및 조사방식, 가중치 산출 방법 및 근거, 조사자료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6) 조사원의 질 향상과 자료수집 과정 관리

- 통계청이나 외국인 조사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전문 조사원을 고용하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자료수집과정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7) 충분한 예산의 확보

- 지난해 조사에 투입된 예산으로 16만 다문화 가족을 전부를 제대로 조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설문조사의 비용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로드맵과 연구네트워크

- 본 진단팀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중앙과 지방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목 차

제 1 장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수시통계품질진단 개요	1
제 1 절 진단의 목적	1
제 2 절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개요	2
제 3 절 진단 사업수행범위	4
1.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품질진단의 기준과 절차	4
2. 통계 작성 부문별 진단 전략	8
3. 통계진단 업무 수행 경과	10
제 2 장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부문별 통계품질진단 결과	11
제 1 절 부문별 품질진단 결과	11
1. 품질관리기반	11
1) 기본현황	11
2)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 통계담당자와의 면담	13
3)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분석	16
2. 전문가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9
1) FGI 요약	19
2) 통계 작성 참여 연구자	20
3) 다문화가족 연구 전문가	22
4) 담당공무원	26
3. 세부작성 절차별 체계	27
1) 조사설계 및 기획	27
2) 조사표 설계	28
3) 조사원 교육: 무응답오차 및 측정오차 점검	32
4. 수집자료 정확성 점검	35
1) 현장조사실태 검증:	
면접진행 상황 평가를 통한 적용범위 오차점검	35
2) 자료수집 형태 점검	36

5. 통계자료의 서비스 충실성 진단	39
1) 공표자료 오류점검	39
2)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	46
3) 조사결과보고서 검토	48
제 3 장 국내외 해외의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조사	52
제 1 절 국내의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조사	52
1. 국내의 다문화가족 조사 현황	52
2. 다문화가족 조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	53
3. 다문화가족 조사의 조사대상과 규모에 따른 분류	55
4. 다문화가족 조사의 내용에 따른 분류	55
제 2 절 외국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현황과 교훈	58
1. 외국의 조사 현황	58
2. 외국사례가 한국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주는 교훈	62
제 4 장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문제점 및 발전전략	64
제 1 절 연구기획	64
1. 연구내용과 범위 설정: 다문화가족 개념 및 조사범위의 적절성	64
1)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정의	64
2) 개선방안	66
2. 모집단 명부(표집틀)의 적확성	69
1)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69
2) 모집단 명부 구축	69
3. 조사주기의 적절성	70
1) 조사주기의 문제점	70
2) 개선방안	70
4. 전수조사의 적절성	71
1) 전수조사의 문제점	71
2) 표본조사로의 전환	72
제 2 절 측정의 정확성과 자료의 대표성 확보	73
1. 설문작성과정의 체계화	73

1) 문제점	73
2) 개선방안	73
2. 조사표 및 항목구성	74
1) 조사필요영역	74
2) 응답범주 및 항목 구성 방안	77
3. 조사원 교육	78
1) 문제점	78
2) 개선방안	79
4. 자료수집과정 관리	81
1) 문제점	81
2) 개선방안	82
5. 조사결과보고서: 조사결과보고서의 문제와 향후 개선안	83
1) 조사과정에 대한 논의	84
2) 가중치 산출방법 및 근거	84
3) 조사의 한계	85
제 5 장 결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개선방안 요약 및 로드맵	89
제 1 절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로드맵	89
제 2 절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 대상 조사에서의 유의사항	92
참고문헌	96

표 목 차

<표 1-1>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개요	3
<표 1-2>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품질진단 항목별 진단전략	7
<표 2-1> 조직관리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 인식 재평가	18
<표 2-2> 한글 조사표와 중국어 조사표의 비교를 통한 번역 오류 점검 ..	30
<표 2-3> 배우자 부모의 생존여부와 배우자 아버지의 등록장애인 여부 ..	39
<표 2-4> 아팠던 일수와 누웠던 일수 간 비논리적 사례	40
<표 2-5> 한국국적 취득여부와 선거참여 경험	41
<표 2-6> 현 배우자와의 동거여부와 이혼/별거의 이유	41
<표 2-7> 현 혼인상태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42
<표 2-8> 현 혼인상태와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42
<표 2-9> 혼인상태와 배우자 취업여부	43
<표 2-10> 혼인상태와 배우자 가족모임 참석 빈도	43
<표 2-11> 취업경험과 직장 내 차별경험	44
<표 2-12> 자녀수와 자녀존재 여부	45
<표 2-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복사료 기준	47
<표 2-14> 일반이용자 사용료	47
<표 3-1> 조사기관별 조사목적	54
<표 3-2> 조사기관별 조사대상, 조사규모, 조사기간	56
<표 3-3> 조사기관별 조사내용	57
<표 3-4> 한국과 외국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사례 비교	60
<표 3-5> 일본 지방자치정부의 다문화가족조사	61
<표 4-1>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조사원 교육 일정표	80
<표 5-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문제점 및 개선과제	87

그림 목 차

<그림 1-1> 통계품질의 시각에서 본 사회조사의 흐름	6
<그림 2-1> 조사원 면접 상황 기록의 예	36
<그림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정선 과정 예	37
<그림 2-3> 본 진단팀의 자료정선 과정 예	38
<그림 4-1> 국제결혼건수의 변화추이	67
<그림 4-2>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가구방문 기록표	82
<그림 4-3> 한국종합사회조사의 미완료 설문에 대한 조사원 기록사항	83
<그림 5-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로드맵	90
<그림 5-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조직도	91

제 1 장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수시통계품질진단 개요

제 1 절 진단의 목적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08년 3월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2009년 처음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다문화가족 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자 계획되었다. 따라서 이 조사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조사함과 동시에 하위집단별 복지욕구를 파악하려는 목적을 지닌다(김승권 외, 2010).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학문적 및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시작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현실을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수립, 예산편성, 법률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존 조사 자료들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거나 전국조사를 표방했다 하더라도 대표성이 결여되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한국사회에서 이민자(immigrants) 연구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3개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가 공동으로 수행한 조사연구사업이다.¹⁾ 다문화 관련 전수조사의 경험 부재와 준비기간 및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아쉬운 점이 존재하지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는 향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정책의 길잡이가 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해당 통계의 품질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유지하는 것은 향후 다문화가족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통계에 대한 조사방법론의 기준에 따른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철두철미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3년 주기로 실시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효과적인 통계품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진단팀은 2009년에 수집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품질을 평가하여, 그 결과와 개선방안이 향후 품질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2010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 진단보고서는 2009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2009년의 명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기술하는 경우, 맥락에 따라 새로운 명칭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도 탄력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제 2 절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개요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등 3개 유관 부처들은 보건복지가족부를 통계작성기관, 여성부와 법무부를 공동참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을 조사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2009년 초부터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준비를 시작하였다. <표 1-1>은 본 진단팀이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메타자료이다. 이 조사의 연구진은 주로 사회학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학계의 다문화가족 및 사회조사 전문가들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의 정책전문가들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현장조사는 전적으로 보사연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연구진들은 연구방향 설정, 조사표 구성, 확정, 번역 등의 작업을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등 유관부처들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사항, 가족관계, 취업,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 사회통합 등 다문화가족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망라한다. 한글로 작성된 조사표의 번역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보사연은 2009년 7월 6일 청주에서 열린 충남, 충북, 대전 지역 조사원 교육을 시작으로 7월 17일 울산 지역 조사원 교육까지 총 160명의 조사관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공무원과 3,000명에 이르는 조사원들에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들을 현장조사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였다.

현장조사는 조사원교육 실시 직후인 7월 20일부터 9월까지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조사 진행 부진으로 1개월 연장하여 10월 31일까지 약 세 달 반 동안 진행되었다. 당초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167,090명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154,333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이들 중 131,702명(85.3%)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이들을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간단히 말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15만 4천 명의 결혼이민자 중에서 약 3만 명에 가까운 잠재적 조사대상자가 누락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최다인원의 목록이 작성된 것이다(이혜경 외, 2010). 원래 예정보다 한 달 반이 더 소요된 현지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73,669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성공하였다. 따라서 최종 응답률은 전국 평균 55.9%이다. 전국 16개 광역시·도들 가운데 경상북도의 응답률이 76.3%로 가장 높고, 대전과 서

울의 응답률이 각각 41.2%와 41.4%로 가장 낮다.

<표 1-1>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개요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명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책임자	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 배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설○○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 - IOM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 -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보건복지가족부 ; 법무부 ; 여성부
연구목적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국내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조사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다문화가족 하위집단별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조사는 다문화가족의 일반특성 및 취업, 경제수준,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등을 조사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상국가	대한민국(KOR)
조사지역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지역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자	결혼이민자 전수
자료수집기간	1차 : 2009년 7월 20일 ~ 9월 20일 2차 : 2009년 9월 21일 ~ 10월 31일
시간적 차원	횡단적 조사(Cross-sectional survey)
자료수집주기	2009년 최초 조사 실시 이후 3년마다 조사 예정
조사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수집방법	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조사
목표모집단 리스트	<전수조사> (1) 행정안전부 2009년 5월 통계 :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 명단 16만 7천 명 중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귀화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등”을 제외한 15만 4천명의 조사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2) 현장조사를 통해 13만 1천 여 명의 결혼이민자를 확인, 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목표모집단 크기 및 응답률	13만 1천 여 명(결혼이민자 전수)/ 73,669명(유효사례), 응답률 55.9%
가중치	있음;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낮은 응답률을 보정하기 위해 모집단의 지역별, 성별, 국적별 분포에 사후조정을 실시하여 응답가중치를 부여함

조사가 완료된 후 응답률에 있어서 지역 간 큰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출신국과 성별의 분포도 연구진이 처음 설정한 모집단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연구진은 보사연이 거주지를 일일이 확인해 만들어진 131,702명으로 구성된 모집단 자료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분석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131,702명 모집단 자료의 정확성이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의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제 3 절 진단 사업수행범위

1.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품질진단의 기준과 절차

통계청은 통계 작성자나 연구자가 품질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품질진단을 체계적으로 가능케 하기 위하여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 또는 정시성(timeliness or punctuality), 비교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 접근성 또는 명확성(accessibility or clarity) 등 품질진단의 여섯 가지 차원(dimension)을 제시하고 있다. 품질진단이 통계가 작성되고 공표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전반적 관리체계를 진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섯 가지 차원을 통계작성의 각 단계인 품질관리기반,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 실태, 세부 작성별 체계, 수집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 등에 적용, 평가한다면 질 높은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 기준이 통계품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 진단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첫째,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여서 표본오차에 대한 '정확성'의 기준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진단팀은 비표본오차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둘째, 최초로 공표된 대표성 있는 다문화가족 자료라서 '일관성'의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수집된 자료라서 일반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점도 '관련성' 판단기준의 적용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접근성/명확성'의 적용가능성도 약화시킨다. 간단히 말해, 여섯 가지 판단기준 가운데 '관련성'과 '정확성'의 일부 요소들과 '시의성' 및 '비교성'만으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검토할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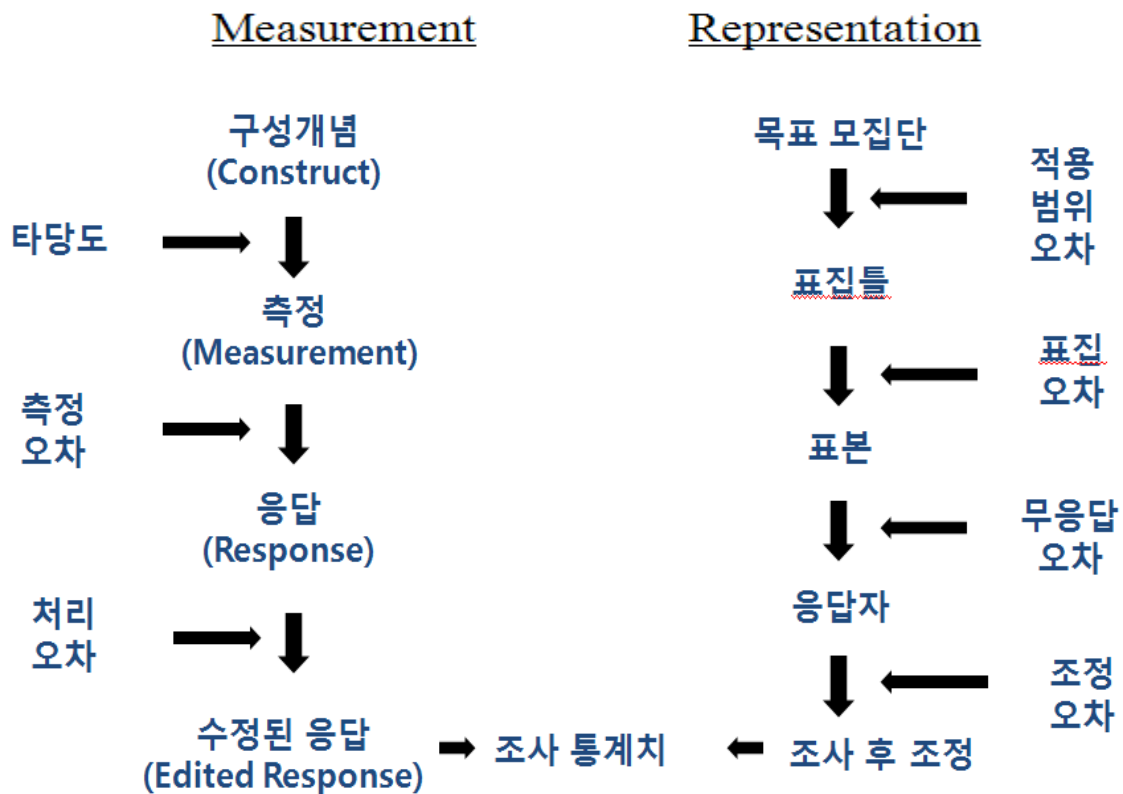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위의 여섯 가지 판단기준을 가지고는 통계작성 각 단계를 효과적으로 진단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게다가 이 판단기준들은 약간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자료수집과정에 대한 세밀한 평가에 집중하여 진단을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진단팀은 통계청이 제시한 판단기준과 사회조사 자료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체조사오차접근법(total survey error approach)을 품질관리기반,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 실태, 세부 작성별 체계, 수집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 각각에 적용하고자 한다(Groves et al., 2007).

전체조사오차접근법은 우선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계품질의 저하가 설문작성 시 발생하는 측정(measurement)의 문제와 조사대상 선정에서 생기는 대표성(representation)의 문제로부터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즉 개념정립→질문구성→응답→수정된 응답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측정과정과 목표모집단 선정→표집틀 구축→표본→응답자→사후조정의 순서로 구성되는 대표성 확보 과정들의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두 단계 간 차이가 바로 오차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수행자의 임무는 이전 단계와 다음 단계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조사에서 측정 또는 비표본오차의 문제와 대표성 또는 표본오차의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수행자는 가용한 시간과 예산을 감안하고 실시 중인 조사의 특성상 보다 더 또는 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을 계산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체조사오차접근법은 통계품질을 평가함에 있어 비용이나 시간의 한계와 달성 가능한 자료의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연구가 어떻게 설계되고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양질의 신뢰할만한 자료를 산출하였는지를 알게 해준다.

<그림 1-1>은 통계품질의 시각에서 본 사회조사의 흐름과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의 종류를 보여준다. 첫째, 타당도는 구성개념과 측정치 간의 관찰 가능한 차이를 의미한다. 둘째, 측정오차는 이상적 측정과 획득된 응답 간의 관찰 가능한 차이이다. 셋째, 처리오차는 응답자가 실제 제공한 것과 추정에서 사용된 변수간의 관찰 가능한 차이이다. 자료생산자는 자료수집이 완료되면 자료의 신뢰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변수들이 입력된 형태와 변수들 간 논리적 일관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잘못 입력된 것

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수정되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응답자의 의도와 자료 생산자의 판단 간 심각한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적용범위오차는 목표모집단과 표집틀 간의 관찰 불가능한 차이이다. 이는 표본이 아닌 표집틀의 문제이며, 전수조사라 할지라도 표집틀의 정확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표집오차는 표본과 표집틀 간의 관찰 불가능한 차이를 말한다. 여섯째, 무응답오차는 응답자 집단과 표본 간의 관찰 불가능한 차이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100%의 응답률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사가 무응답오차에 노출된다. 무응답오차에 노출된다는 것은 무응답 편향(nonresponse bias)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응답률이 높다고 반드시 무응답 편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오차는 통계적 처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모집단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가중치를 잘못 부여하거나 하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사회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곱 가지 종류의 오차들의 다소와 균형에 따라 전체적인 통계품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통계품질의 시각에서 본 사회조사의 흐름



<표 1-2>는 본 진단팀이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품질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수립한 부문별 진단항목과 그 전략을 보여준다. 전체오차접근법은 <표 1-2>에서 제시된 진단항목들 중 세부작성별 체계와 수집 자료의 정확성을 평가하는데 특히 훌륭한 도구로 활용된다. 이 두 가지 항목이 통계자료의 품질과 신뢰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인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진단팀은 <그림 1-1>의 일곱 가지 오차들의 발생 가능성을 세부작성별 체계와 수집 자료의 정확성의 세부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표 1-2>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품질진단 항목별 진단전략

구분	항목	세부내용	진단전략	
부문별 진단	품질관리기반	작성 실태, 담당자 인식 파악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당자 면담, 슈퍼바이저와 조사원 면접	
	요구사항 반영	통계작성계획 및 수행과정 적절성 검토	표적집단면접(FGI) 2회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전문가에 의한 진단 및 관련 자료검토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 목표모집단 명부 결과보고 분석	
	수집자료의 정확성	현장조사 실태, 자료수집형태 점검, 투입자료 선정 및 처리의 적절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면담, 슈퍼바이저와 조사원 심층 면접, 관련 자료 분석	
	통계자료의 서비스	공표자료 오류 점검	공표자료 오류 점검	공표자료 오류 점검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	공표자료 접근성 점검	공표자료 접근성 점검
조사결과보고서 검토		조사결과보고서 검토	조사결과보고서 검토	
중간보고			2010년 8월 13일 시행	
진단내용 종합 및 보고서작성	진단결과 종합보고서		해외사례검토	
	품질보고서			

전체오차접근법은 품질관리기반, 요구사항 반영, 통계자료의 서비스 등과 같이 통계품질과 직결되기보다는 통계작성 환경이나 사후관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전체오차접근법이 조사표 작성, 면접, 표본추출, 자료수집 및 처리, 조사 후 조정 등 자료가

생산되는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진단팀은 세부작성별 점검표에 나와 있는 조사통계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들과 통계자료의 충실성을 기준으로 품질진단을 시도할 것이다.

2. 통계 작성 부문별 진단 전략

본 진단팀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품질을 진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보사연이 제출한 조사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고, 전문가 FGI 결과와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보사연 연구진과의 면담 결과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이미 출간된 조사결과보고서와 공표된 원시자료도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본 진단팀이 여성가족부와 보사연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의 목록이다.

- 가. 세부작성절차별 체계점검표
- 나. 표본가중치 내용서
- 다.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교육자료집
- 라. 면접원 교육관련 자료
- 마. 번역절차 자료
- 바. 사전조사 계획서 및 결과반영 자료
- 사. 조사원확인 관련 자료
- 아. 조사원기록 관련 자료
- 자. DataCleaning 관련 자료
- 차.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위의 자료를 활용해 수립한 세부항목별 진단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진단팀은 품질관리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장의 관심, 전략과 방침, 인적자원 관리 및 예산규모, 통계작성 환경 중에서 특히 통계작성 환경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진단팀은 보사연이 제출한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보사연 담당자 면담 녹취록, 슈퍼바이저와 조사원 현장점검 기록 등을 활용할 것이다. 통계작성 환경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가

용한 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둘째, 요구사항 반영 항목을 검토하는 데에는 두 차례 걸쳐 실시되었던 전문가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녹취록이 중점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용자만족도조사 없이 전문가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만 평가하는 이유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가 공개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자료에 접근하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용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셋째,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는 조사결과보고서와 보사연이 제출한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교육자료집, 교육일정 및 관련자료, 번역절차 자료, 사전조사 과정 자료, 세부작성절차별 점검표에 제시된 내용들을 토대로 검토될 것이다. 이들 자료들을 통해서, 본 진단팀은 조사설계 및 기획, 조사표 작성, 현지조사 계획, 자료입력 및 처리 계획 등을 평가할 것이다. 넷째, 수집자료의 정확성 점검은 자료가 정확히 수집되었는지, 절차적 오류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즉 현지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진단팀은 7개 지역에서 실시한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현장점검의 녹취록을 정리해 현지조사 실태를 검증하고, 조사원확인 관련 자료와 조사원 기록 관련 자료를 분석해 자료수집과정과 자료입력 및 처리과정 등 일련의 자료수집 형태를 점검할 것이다. 특히 원시자료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생산과정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위에서 제시된 전체조사오차접근법의 일곱 가지 오차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와 수집자료의 정확성 점검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어, 측정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조사표 평가와 테스트의 내용, 면접 방식 선택의 적절성, 조사원 교육과 감독의 수준 등이 점검되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본 진단팀은 통계자료의 서비스 충실성 진단을 위해 원시자료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발견하고,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공개 자료의 구체성과 정확성 및 자료 접근의 용이성을 파악해 볼 것이다.

3. 통계진단 업무 수행 경과

본 진단팀은 6월 30일 통계청 품질관리과 담당자들과 과업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곧바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통계 품질진단에 착수하였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품질진단은 통계담당자 면담, 전문가 표적집단면접,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현장점검, 보사연이 제출한 자료와 문헌의 검토에 초점을 두고 계획되었다. 보사연이 제출한 자료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본 진단팀이 요청한대로 도착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 품질진단 업무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본 진단팀이 입수한 자료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면, 먼저 보사연의 자료제출이 지연되었다. 본 진단팀이 보사연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목록을 제출하고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뒤 자료를 받기까지 약 3주가 소요되었다. 이 기간 동안 본 진단팀은 전문가 FGI와 현장점검에 집중하였다. 둘째, 본 품질진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31,702명에 대한 <조사원 기재사항>과 시군구별 조사완료 현황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지 못했다.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 과업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일부 진단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본 진단팀은 한국의 이민 연구를 주도해 온 인구학회, 사회복지학회, 이민학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전문가 FGI를 진행해 해당 통계의 현재와 미래를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모두 일곱 개 지역에서 수행된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현장점검에서도 전문가 FGI에서 드러나지 않은 현장의 문제점들을 속속들이 발견할 수 있었다. 원시자료에 대한 분석은 공표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여러 문제들이 발견되었으며, 완결성 높은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Data Cleaning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밝혀 주었다. 일본, 대만, 호주 등 외국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 사례 검토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게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제 2 장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부문별 품질진단 결과

제 1 절 부문별 품질진단 결과

1. 품질관리기반

1) 기본현황

품질관리기반은 통계 담당 조직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을 파악해야 본격적인 통계품질 진단이 가능하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진단팀은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조사위탁기관인 보사연에 품질관리기반 현황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동시에 보사연을 방문하여 2009년 통계 작성 책임자 및 연구진, 그리고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해 통계 담당기관의 의문사항, 애로사항, 개선사항을 청취하였다.

다음은 보사연 담당자를 면담하기 위해 준비된 질문들의 목록이다.

1. 가족 조사임에도 배우자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조사표 구성의 이론적 배경 제시. 조사표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대한 문서나 제안서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3. 보건복지부, 여성부, 법무부, 보사연, 한국이민학회는 조사표 구성에 각각 어떤 기여를 하였습니까?
4. 표본조사 대신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5. 응답자 리스트 구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6. 정부 자료에 존재하는 응답자가 실제 찾아갔을 때 거주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었습니까?
7. 정부 자료와 실제 거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까?
8. 면접진행상황에 대한 조사원별 기록이 있습니까?
9. 조사대상자가 약 154,333명에서 131,702명으로 감소한 이유와 모집단 및 조사대상자 확정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10. 조사팀의 구성현황과 구성방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1. 슈퍼바이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와 통반장의 선정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12. 조사원으로 활동한 방문교육지도사와 통반장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면접원 교육자료집이 있습니까?
13. 조사표 번역 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14. 역번역(back-translation) 과정과 국적별 사전조사 과정은 거쳤습니까?
15. 조사원 허위보고에 대한 확인조사는 실시하셨습니까?
16. 자료처리(data processing) 및 자료정선(data cleaning)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17. 가중치 변수 작성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보사연 담당자 면담 직후 요청한 자료의 목록이다.

1. 표본가중치 내용서
2. 조사원 교육 자료집 또는 지침서
3. 면접원 교육 일정 및 계획서
4. 번역 과정에 대한 자료(회의내용 등)
5. 사전조사 절차 및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
6. 현장조사 관리 조직도(중앙-지역 수퍼바이저-조사원)
7. 조사원 기록표(조사원 기재사항 131,702 부)
8. 지역별 조사완료 현황
9. Data Cleaning 관련 자료
10. 원시자료

위의 요청자료들 중 번역절차 및 과정에 대한 자료, 조사원 기록표, 시군 구별 조사완료 현황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이들만으로는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진단 대상 통계의 정확성과 질을 평가하는데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131,702부의 조사원 기재사항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본 품질진단의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 통계담당자와의 면담

다음은 보사연 담당자들과의 면담결과를 조사관리의 주요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별첨 2 보사연 방문 면담 기록 참조)

① 통계품질에 대한 전반적 이해

본 진단팀은 통계품질에 대한 통계 작성 담당자의 인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목표모집단 선정부터 자료처리에 이르기까지 조사과정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과 그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조사경험과 오랜 역사를 보유한 보사연 조사관리팀은 오차들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진단팀이 요청한 대부분의 문서나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은 발견되었다. 첫째, 조사표구성, 사전조사, 조사원교육, 현지조사 등에 필요하고 자료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하고는 있었으나, 이들을 행정적인 절차나 문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사전조사계획서와 조사원교육자료집은 조사에 대한 소개와 같은 일반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조사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특화된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조사담당자들도 이로 인한 오차발생 가능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이러한 경향 때문에 원자료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에는 노력을 기울인 반면, 조사의 각 단계에서 생성된 문서나 정보들을 자료화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면, 조사원이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여 기록한 <조사원 기재사항>을 시군구별로 정리해 자료화하지 않았다거나, 사전조사의 계획과 실행, 그리고 결과와 관련된 기록들을 남기지 않았다거나, 슈퍼바이저별 조사원관리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 조사 관리의 어려움을 안고 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사연 담당자는 조사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비일관적 원칙의 적용이 통계품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조사원에게 되도록이면 80명 이상의 조사대상자를 할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정에 따라 100명에서 150명까지 할당한 경우도 자주 발견되었다.

② 모집단명부

한국사회 내 다문화가족 모집단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167,090명의 명부와 보건복지부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이 아닌 가족을 제외하고 새롭게 작성한 154,333명의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등이 있다. 즉 이러한 차이만 제외하면 두 가지 모집단 명부는 실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족부의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를 모집단 명부로 사용하였다.

보사연 담당자들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가 몇 가지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를 토대로 모든 가구를 방문한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최근 입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셋째, 중국 한족의 등록정보가 가장 부정확했으며, 이는 다른 민족집단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의 조사완료율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사연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대신 방문조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된 131,702명의 다문화가족 명부를 목표모집단으로 정하였다. 보사연 담당자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모집단 명부에는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의 다문화가족들 중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된 사람들과 최근 입국해 보건복지부 명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확인과정에서 새롭게 발굴된 사람들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작성된 131,702명의 명부가 작성되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관리가 중요해졌다. 그러나 보사연 담당자는 감독 및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131,702명의 명부에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의 확인되지 않은 다문화가족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시인하였다.

③ 목표 모집단 선정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목표모집단은 가구방문을 통해 확인된 131,702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모집단의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고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조사 전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단 명부 작성과정에서 조사원들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조사원기록표와 조사원확인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 131,702명의 명부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사연 담당자도 이 명부를 정확한 모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대답했으며, 전체 모집단 내에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조사원의 허위보고로 인해 포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였다. 사실 이러한 모집단 명부의 부정확성은 중앙-지방 행정조직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사대상자 각각에 대한 접촉여부 및 조사완료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류해놓지 않은 것은 조사관리의 부실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종 131,702명 명부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확인체계의 부재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목표모집단 설정과 보고서작성 과정에서의 부정확한 가중치 부여로 이어졌다.

④ 조사표 구성 및 번역

설문도구 개발과 조사표 구성의 중요성은 기타 사회조사에서보다 외국인 조사에서 특히 강조되곤 한다. 일단 한글이나 영어로 조사표 구성이 완료되면 여러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한 정확한 설문 도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Groves et al. 2006).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한국어와 외국어에 능통한 조사대상자의 낮은 교육수준을 고려한 설문문항의 난이도 조정과 역번역이 필수적이다. 역번역은 번역자와 감수자를 별도의 인물로 정하고, 첫 번째 번역자에게 먼저 초벌 번역을 의뢰하고 이렇게 번역된조사표를 다시 두 번째 감수자에게 한국어로 번역(back translation)하도록 하여 이를 원래 조사표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사연 담당자는 시간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만약 역번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최소한 번역자 이외의 감수자를 통해 번역된 조사표의 정확성을 검토하게 했어야 한다고 본 진단팀은 판단한다.

⑤ 사전조사

보사연은 조사표 구성이 완료하기 직전에 사전조사를 경기도의 '2009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 행사에서 한 차례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전조사를 위한 예산이 따로 책정되지 않아서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고 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행사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의 특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중산층을 과대대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한국사회에서 어느 정도 적응에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보사연은 사전조사 계획서, 사전조사 결과표, 사전조사 전후 대조표를 자료로 남기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전조사

를 통해 어느 정도 조사표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⑥ 조사원 교육

조사원 교육은 지역별로 한 차례 이루어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 실시 당시 75문항으로 구성되었던 조사표가 실제 조사에서는 56문항으로 축소되는 등 그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육내용의 대부분이 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조사기간 및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 등에 집중되어 조사표에 포함된 질문들의 세부내용에 관한 교육은 진행되지 않았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 교육시간도 조사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기에는 짧았다.

⑦ 조사원관리 및 면접과정 관리

조사원모집은 전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원은 다문화지원센터 방문지도사, 통반장, 희망근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사비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 조사원모집이 제대로 안된 지역들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조사원의 업무량 과다로 이어졌다. 보사연의 담당자는 전반적으로 현지조사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완료된 <조사원 기재사항>과 조사표 진위에 대한 확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⑧ 자료처리 및 자료정선(Data Cleaning)

자료처리 및 자료정선에 대하여 본 진단팀과 보사연 담당자 간의 인식수준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사연 담당자는 자료처리 및 자료정선을 보사연 조사관리팀의 기준에 의거해 완료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질문한 결과,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검토와 수정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본 조사팀은 조사표에 포함된 문항들의 가능한 논리적 연관관계를 따져 그 일관성을 따져보기로 결정하였다.

3)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분석

본 진단팀은 위의 통계작성 담당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품질관리기반 현황표의 관련 항목들을 재평가하였다.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품질관리기반 현황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기본 현황, 제2부는 통계작성 여건, 제3부는 조직관리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 제4부는 작성담당자와의 면담 내용이다. 현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주관부서인 여성가족부 담당자가 품질관리기반 현황표를 제3부까지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제3부 조직관리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본 진단팀은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자료들과 보사연 담당자를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3부 조직관리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재평가는 최대한 자의성을 배제하고 면담과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표 2-1>은 여성가족부의 평가와 본 진단팀의 평가를 동시에 제시한다. 본 진단팀의 평가는 여성가족부의 평가를 망각한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체크 표시(✓)가 여성가족부의 평가를 보여주며, 원(○) 표시는 본 진단팀의 평가를 나타낸다. 그 결과 여성가족부가 평가한 점수보다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통계품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조사과정 각 단계별 준비상황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표 2-1> 조직관리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 인식 재평가

질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조직 관 리 실 태	1. 조직의 리더(기관장)가 통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비전과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품질에 관한 조직의 비전 제시 ■ 조직문화의 변혁을 통한 가치관의 정립 NAP 	✓					
	2. 조직의 리더(부서장)는 통계품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품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품질에 대한 이해도 ■ 통계품질관리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적절한 지원 및 배분 ■ 조직리더에 의한 통계품질관리 추진 	✓		○			
	3. 조직리더(부서장)가 통계품질관리 비전을 이행하기 위하여 방침, 계획, 목표, 세부목표 및 프로세스를 수립·시행하고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품질에 관한 경영방침의 수립 ■ 이용자 중심의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중장기 전략목표 수립 ■ 합리적인 방침과 전략 전개 ■ 적절한 시스템에 의한 타당한 실행계획 수립 	✓		○			
	4. 작성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가 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품질관리 전담부서 설치 또는 전담인력 배치 ■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계획 ■ 품질 관련 교육수요 파악 및 교육이수 실적 관리 	✓		○			
	5. 통계담당 직원은 품질관리 능력 개발 및 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품질을 위한 전문적 모임의 활성화 ■ 통계품질 제고 동기부여 	✓		○			
통 계 담 당 자 인 식	6. 지금 맡고 있는 통계업무량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7. 현재 통계작성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8. 현재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AP		✓				
	9. 지금 맡고 있는 통계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0. 통계작성 과정에서 품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2. 전문가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결과

본 진단팀은 7월 23일과 28일 양일간 총 11명(본 연구진과 통계청 소속 참여자 제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FGI에는 인구학회와 사회복지학회 전문가 각각 2명씩 총 4명이 참석하였으며, 두 번째 FGI에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 2명, 이민학회 연구진 3명(조사 참여 연구자), 사회복지학회 전문가 2명 등 총 7명이 참석하였다. FGI는 특정한 형식 없이 사회자가 큰 주제를 제시하면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FGI 결과를 통계작성 참여 연구자, 담당 공무원, 다문화가족 연구 전문가 등 참여자의 특성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의 주장을 제시하기 전에 본 진단팀의 FGI 결과 요약은 먼저 정리한다.

1) FGI 요약

① 통계작성 참여연구자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첫 번째 전수조사라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조사의 규모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볼 때 참여한 연구자들의 노고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목표모집단의 명부를 점검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의 상호 협조와 다른 학회 간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짧은 연구기간, 체계적 관리의 부재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다. 문항선정에 있어서도 부처의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어야 했기 때문에 특정 주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는 문항들이 포함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문항이 필요하다는 것과 전수조사의 문제점에 동의한다.

② 다문화가족 연구 전문가

2009년 조사의 의의 중 하나는 모집단을 파악한다는 데 있으나,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조사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조사문항이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향이 있어

향후 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조사도 따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다보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자료의 오류(selection bias) 가능성이 있다. 조사원 수당도 너무 적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수조사에 가중치를 사용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는 향후 조사에서는 전수조사보다는 표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해 목표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적인 조사원을 고용하고 조사대상자의 언어사용이 가능한 조사원 모집도 고려해야 한다. 조사자료도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

전국 규모의 첫 전수조사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조사원들도 다문화지원센터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가가호호 방문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은 사실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아주 오래 전에 귀화하여 한국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많다. 농민이나 노동자들도 많지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이다. 이러한 이질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전수조사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목적은 일정 부분 성취된 것으로 보인다.

2) 통계 작성 참여 연구자

① 전수조사의 문제

통계 작성 참여연구자들은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전수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모집단 파악과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부와 복수의 학회들이 서로 협력하여 조사를 시행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대안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하며, 표본

조사의 설계를 위한 목표모집단의 정보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② 결혼이민자 명부의 문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결혼이민자 명부의 부정확성으로 131,702명의 모집단 정보에 한계가 있으나,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하였다.

③ 조사문항 상의 문제

통계작성 참여연구자들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자기기입식 설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항이 많아서 응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학문적으로 유용한 종속변수에 관심이 있었으나, 유관 부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문항들이 많아 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토로하였다. 특히,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필요한 배우자관련 문항과 지자체단위의 심층 분석을 위한 지역 특성 관련 문항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실시해야했던 전수조사였고 부처간 입장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외부의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조사원 수당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조사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수궁하였다. 연구자들은 문항 수를 줄이고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향후 표본조사가 시행된다면 특정 주제 연구에 적합한 심층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유관 부처들과 연구자들의 입장조율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자와 정책입안자들 간의 차이는 앞으로도 풀어야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④ 조사자료의 문제

연구자들은 조사자료에서 응답자의 편향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비교적 삶의 질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응답을 했다면 정책에 적합한 자료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분포를 국가통계와 맞도록 조정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중치 사용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을 토로하며, 공통적으로 가중치 사용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였다.

⑤ 예산 및 조사과정

낮은 예산 책정과 전수조사는 많은 문제를 유발하였으나, 보사연이나 여러 연구자들의 노고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⑥ 향후 개선방안

향후 개선사항에 있어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의 계획이었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구축된 모집단 자료를 지역별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층화하여 확률표집하면 표본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필수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조사조직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은 이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조사완료율의 지역별 차이가 컸다는 것이다. 향후 조사에서는 조사원 관리 및 조직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수긍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의 목적이 시·도, 적어도 광역단위에서 수집된 자료가 사용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역에서 조사 자료를 사용할 때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 자료의 구성과정이나 한계 등의 문제를 사용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사 주관기관과 조사주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통계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 이러한 전수조사를 다시 하는 것보다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본 전수조사로 하고, 필요한 다문화가족 통계에 대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통계가 연계되어야 하며 각 부처에서 원자료 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3) 다문화가족 연구 전문가

①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한 의문

다문화가족 연구 전문가들은 전수조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조사표의 문항수가 너무 많아 응답의 집중도가 떨어져 최종자료의 질이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첫 조사인 만큼 모집단을 파악한다는 데 의의

를 둘 수 있으나 모집단 파악이 정확했었는가라는 또 다른 의문도 제기하였다. 더구나 이번에 파악된 131,702라는 수의 목표모집단 명부가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이유로 파기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되는 것이 자료의 질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이라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이용하여 국제결혼이민자들의 기본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별도의 표본조사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모두 수긍하였다. 전수조사의 문제는 조사과정의 정확성과도 연관이 되는 데, 제한된 예산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조사원 관리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사 자료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② 조사문항의 문제점

다문화가족 연구 전문가들은 조사문항 상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첫째는 조사문항이 너무 많고 조사대상자가 자기기입식 설문을 의도대로 해석하고 응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자국어로 번역된 조사표에 응답하였다 하더라도 역번역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사표 번역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자기기입식의 설문으로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 중국어를 읽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상태에서 기입된 조사표가 과연 어디까지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자국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국어로 조사표를 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지적이다. 다문화가족 연구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통번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답자가 문맹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문화 강사나 통번역에 관련된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설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문항이라고 하기에는 이 집단의 고유의 특성을 도출하는데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조사문항은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조사표와 별 차별성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실제로 결혼이민자의 삶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설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다문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한국의 가족실태조사라고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만큼 일반 가족실태조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이 많았다.

다문화가족 연구 전문가들은 결혼이민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 문항

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을 묻는 응답범주의 구간이 이민자들의 생활수준 간 차이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넓은 점, 본국으로의 송금에 대한 질문이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없고 실제 복지욕구에 대한 상세한 질문도 없다고 했다. 가족관계나 사람들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 요청하는 응답구성도 모호한 부분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를 기준으로 했다가 배우자를 기준으로 했다가 하는 부분들이 그것이다. 다문화가족 연구 전문가들은 여성결혼자와 남성결혼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 대한 욕구도 변화하게 되는데(입국 초에는 주로 관심이 생활, 적응 등에 있었다가 대략 3년 후 직업 등으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거주기간과 관련해서 이러한 차이들을 조사 자료가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남성 결혼이민자의 주요 국적인 파키스탄, 서유럽, 북미가 모두 기타코드로 처리된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며, 이에 대한 기초적인 인구학적 정보는 따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③ 참여한 응답자의 문제

다문화가족 연구 전문가들은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이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특성을 모두 담지 못하고 일부분에 치우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미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거나 생활이 안정되거나 가족관계가 원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이민자들이 더 많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삶에 만족하고, 가족관계도 좋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도 양호하고, 모국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연락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성공적으로 적응해 경제상태가 양호한 다문화가족의 모습만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러한 예를 들면서, 다문화가족 연구 전문가들은 조사자료에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혼 등의 가족해체를 경험한 응답자가 너무 적게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들에 의하면, 이 문제는 전수조사가 갖는 문제점과 연관되는 것으로써, 자료 내 인구구성의 적

절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표본조사가 더 적절하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혹은 결혼이민자의 정의, 즉 조사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필요해 보이며, 조사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④ 자료처리 상의 문제

자료처리 과정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먼저 국적코드에는 서유럽, 북미코드가 없는데 조사결과에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⑤ 조사과정 및 가중치의 문제

다문화가족 연구 전문가들은 조사원 수당이 너무 적고 조사원 교육이 부실해 현지조사와 최종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주장했다. 통반장, 결혼이민자 등 지역사회에서 친밀한 사람을 조사원으로 활용한 것은 긍정적이거나 조사원의 기본적인 자질과 언어소통 능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더불어 조사대상자의 경우, 이번 다문화실태조사뿐 아니라 이미 여러 조사를 경험해왔기에 조사라는 것 자체에 지쳐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한국사회의 약자로서 감시당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윤리적 원칙하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조사이면서 가중치를 사용한다는 것이 언뜻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가중치가 전체적으로 인구 규모와 분포를 맞추는 데 쓰인 것 같으며, 가중치사용이 불가피하다면 가중치 산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고 통계청에서 이에 대한 조언을 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⑥ 자료 이용료에 대한 문제제기

보사연이 책정한 자료이용료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며, 국가의 세금으로 진행된 조사인데 무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동의했다. 가격의 기준도 명확치 않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⑦ 향후 개선방안

다문화가족 연구 전문가들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통해 좀 더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표본조사를 통해 좀 더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현 법안에 따르면 3년마다 조사가 실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1년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기본 설문과 더불어 매년 심층적인 주제를 정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사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도 있었다. 또한 표본조사를 이용하면 접근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을 과표집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설문문항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민자와 이민자 가족에 대한 연구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국제비교를 위한 문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사연구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을 좀 더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 전문연구 인력을 둔다든지,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조사 거점조직을 구성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수긍했다. 관리와 공표는 따로 하는데 조사가 한 번에 이뤄진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통계청이 맡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4) 담당공무원

① 조사의 한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관리했던 담당공무원들은 예산을 처음 책정된 1억에서 15억으로 증가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였다. 예산의 확보가 전수조사를 표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전수조사에는 많은 문제점이 수반되지만 최초의 전국 규모 조사이며 조사대상자를 모두 확인하고 조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산과 시간의 문제로 조사원이나 자료처리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② 조사의 장점 및 의의

담당공무원들은 전국 규모의 첫 전수조사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조사원들도 다문화지원센터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가가호호 방문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사표의 경우도 이번에는 일반적인 사항을 위주로 조사하였으나 다음 조사에는 특정 주제들을 선

정해 심도 있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참여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의 설문 내용도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잘 정리되었으며 번역도 최선을 다해 구성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담당공무원들은 조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리스트는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정리한 모집단 명부는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자료가 연계되어 모집단 명부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세부작성 절차별 체계

보사연은 통계작성 과정에 대한 단계별 자가 진단표를 제출하였다. 이 진단표에 의하면, 해당 통계는 통계작성 기획부터 조사통계 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응답자의 개인비밀 보장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사연이 이러한 평가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진단팀은 보사연 담당자들과의 면담, 전문가 FGI, 세부 작성별 진단 점검표를 포함한 제출 자료,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현장조사 등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적으로 해당 통계의 세부작성 절차별 내용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래의 내용들은 세부작성 절차별 내용점검을 통계청 매 뉴얼이 권고한 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서의 서두에서 제시된 일곱 가지 오차들 중에서 표집오차를 제외한 여섯 가지 오차들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몇 가지 검토한 결과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설계 및 기획

2009년 실태조사 이전에 수행된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는 지역별 혹은 국적별로 일부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다문화가족의 모집단을 파악하고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특성 및 문제 등을 밝히려 한 것이 2009년 실태조

사의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에 의거하여 실시된 실태조사는 알려진 바와 같이 최초의 전국단위 전수조사라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2009년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표방함으로써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하였다. 전수조사의 문제는 본 보고서의 뒷부분에서도 논의되는데,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시행하다보니 응답률과 조사자료의 질이라는 측면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약 15억원으로 증가되었던 것은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결혼이민자라는 응답대상의 특성을 고려하고 전국단위 전수조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시행되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와 보사연이 중앙에서 총괄하고 지역 다문화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사가 수행되다 보니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예산과 시간 안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사전조사 및 현장점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일반특성 및 취업, 결혼생활, 복지욕구 등 다양한 차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2009년 실태조사의 의의로 둘 수 있으나 반면 다양한 차원을 조사하다보니 심층적인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조사에서는 일반 연구자들과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은 조사주기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조사주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의 유입과 이동이 빠른 상황에서 법령에 따라 3년 주기의 조사를 시행하기보다는 조사주기를 1년이나 2년 정도로 조정하고 각 시기별 심층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조사표 설계

① 설문구성과 번역과정을 통한 타당도 점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조사표는 일반특성 및 취업, 경제수준,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작성 절차별 평가에 나타난 것과는 달리, 본 진단팀과 보사

연 담당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핵심적인 문제점은 설문내용이 어렵고 길다는 것과 몇몇 질문들은 과연 현재 한국사회 다문화가족의 현실에 합당한 질문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유관부처들이 협력하여 진행한 최초의 사업이라는 의의가 있는 반면, 이로 인해 시의성이 적은 질문들이 무리하게 포함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많이 지적된 문제점은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2005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투표 경험이나 정당 및 시민단체 가입 여부를 묻는 것은 면접조사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슈퍼바이저와 조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었다.

우리 지역의 경우 구청에서 이미 설문조사를 여러 번 진행하여 사람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부처와 지방기관들 간 유기적으로 협력해 중복되지 않는 조사였으면 좋았을 것이다.....사실 정당이나 시민단체 가입 같은 질문은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 다문화가정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질문하는 조사가 아니라, 해당부처에서 행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질문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문항도 중복도 많았고, 질문들 간 연결도 부자연스러웠다.....(이하 생략)

- 조사원 심층 인터뷰 중에서-

조사표 번역 과정에서도 질문의 난이도나 정확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흔적들이 포착된다. 진단 대상 통계의 조사표는 다양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역번역(back-translation)을 통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사연은 역번역을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번역업체에 번역을 의뢰하여 세밀한 점검 없이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번역 오류로 인한 자료 품질 저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표 2-2>는 본 진단팀이 조사표 번역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 중국어 조사표를 검토한 결과이다. 중국어 조사표의 경우, 중국인이 번역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중국인도 한참 생각해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오타 등의 체계적인 오류에 대한 점검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2-2>에는 이들 중 심각해 보이는 몇 가지만 수록되었다.

<표 2-2> 한글 조사표와 중국어 조사표의 비교를 통한 번역오류 점검

문항	중국어 조사표	한글 조사표	중국어 조사표의 의미
5	⑥ 研究所	⑥ 대학원	⑥ 연구기관
6		⑥ 대학원	⑥ 연구기관
7	① 很练, ② 练	①매우 잘한다 ②잘하는 편이다	뜻이 없는 말(직역: 매우 연습하다)
9	共有多之?		“?”앞에 글자 “多之” 오타
13	13. 来韩国前, 您做工作吗?	일한 적이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13-1	最主要的工作, 在【例1】中 请选择一个。()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번역안함
14	14. 现在您在韩国工作过吗? 根据最近的工作。	가장 최근에 한 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최근에 한 일을”까지만 번역
28	无关事项	“해당없음”	“상관없는 일”
29	③ 还可以	③ 찬성도 반대도 아님	③ 괜찮다
32	32. 有上不了学的子女的人回答	미취학 자녀(보통 연령 미달)	학교 못가는 자녀 (보통 경제적 신체적 이유로)
32-1	32-1. 让您孩子去看别人或者别的地设施吗? 请选择一个。	자녀를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이나 기관에 보냈습니까?	아이에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시설을 보여주었습니까?

32-1	① 不能信让孩子去委托设施	① 안심이 되지 않아서	① 믿으면 안 된다
40-1	40-1. 把个人或者家庭中的困难拿出来商量的人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개인 혹은 집안의 어려운 일을 꺼내고 얘기하는 사람
45	45. 在韩国生活当中, 受过对外国人的歧视待遇吗?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외국 사람에게 대한 차별대우 본적이 있습니까?
45-1	无关事项	“해당없음”	“상관없다”
48-1	48-1. 养老金, 健康保险等社会保险, 因没有钱, 有未能缴纳过的经历	돈이 없어서 기한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	돈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한 경험
48-2	因不能缴纳费用, 电费, 水费, 二者其一; 有被中断过	전기료, 수도료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수도 등이 끊긴 경험	(전기료, 수도료 중 하나) 비용을 내지 못해서 전기, 수도가 끊긴 경험이 있다
48-4	48-4. 过去1年中, 需要大夫的帮助, 但没有钱, 不能去过医院	병원에 가지 못했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보지 못했다
53	—② 养老金	② 국민연금	② 퇴직금
54	54. 下列哪一个是政府援助生活为艰难困苦. 现在您受到的援助是什么? 适合的项全部选择。	다음은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국어로 이해 할 수 없음.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글 조사표에 수록된 문항의 의미와 중국어 조사표에 수록된 문항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가령, ‘대학원’은 ‘연구기관’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자녀를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이나 기관에 보냅니까?’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는 아이에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시설을 보여주었습니까?’와 ‘외국 사람에 대한 차별대우 본적이 있습니까?’로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변질되었다. 이는 번역과정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심각한 측정오류이다. 만약 보사연의 조사표 번역 관리가 부실했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중국조사표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조사표들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의 표에서처럼 그러한 검토를 통해 발견된 오류를 가지고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에게 그 오류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사전조사 평가를 통한 측정오차 점검

보사연이 제출한 사전조사 일정표와 의견취합 문서에 의하면, 사전조사는 2009년 6월 25일 ‘2009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 행사에 참여한 결혼 이민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진단팀은 보사연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사전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35명이 국적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어서 조사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 ‘2009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 행사에 참여한 이민자들은 목표모집단의 구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사전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6월 25일이라는 사전조사 실시 시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교육이 7월 6일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전조사 결과를 연구진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과를 최종 조사표에 반영하기 어려운 일정이었다.

3) 조사원 교육: 무응답오차 및 측정오차 점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열 네 차례 실시된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교육과 관련해 자료의 품질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실한 준비

슈퍼바이저들과 조사원들이 조사원 교육에 대해 자주 지적하는 점은 조사를 주관하는 보사연 측에서 준비가 소홀해 1-2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본 진단팀이 교육자료집을 검토한 결과, 난이도가 높은 사회조사의 면접원지침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사대상자 접촉 및 설득 방법, 상황별 대처요령 및 유의사항, 조사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사표는 다양한 내용들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 면접원지침서에는 조사내용에 대한 해설은 몇몇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렇게 부실한 교육내용은 면접원의 조사표에 대한 이해 수준이 각자의 지적능력에만 의존하게 하여, 잘못된 질문 해석에서 비롯되는 오류의 가능성을 높인다. 면접한 일곱 명의 슈퍼바이저들 중 다섯 명이 이러한 교육내용의 부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다섯 명 모두 교육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설문에 대해서 좀 알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설문내용을 슈퍼바이저가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조사원들의 질문에 답해줄 텐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나 조사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더 응답 받기가 쉽다 식으로 조사원지침서가 나왔어야 했다. 진행과정에서 업무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적응하기도 힘들었다. 8월말에 끝낼 계획이었는데, 9월에도 조사를 하였다.....(이하 생략)

- 슈퍼바이저 심층 인터뷰
중에서-

현장점검 결과에 의하면, 조사원 교육의 대부분은 행정적인 절차, 슈퍼바이저와 면접원의 의무사항, 조사일정, 수당에 관한 부분에 집중되었다. 슈퍼바이저와 조사원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도 없었다.

② 설문 내용 변경

6월 교육 당시에는 75문항 이었으나 7월에는 56문항으로 축소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진단팀은 슈퍼바이저와 조사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슈퍼바이저와 조사원들은 대개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교육시간에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설문 내용 변경으로 인해 몇몇 질문들에 있어서는 교육내용과 면접원지침서 내용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는 면접원지침서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③ 조사 참여 당위성 및 사명감 고취 실패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면접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다문화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 통번장, 희망근로자 등을 모집하여, 그 관리를 보사연에 위탁하였다. 특히 방문교육지도사들이 대거 조사에 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자신들이 낮은 비용으로 중앙 조직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불쾌감을 토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떠넘기는 느낌이 너무 커서 방문교육지도사 선생님들의 반발이 컸다. 방문지도사 활동 자체를 못하겠다는 분도 있었다. 저희 인력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거부하여도 소용없습니다 식으로 교육하고, 그런 분위기를 주셔서, 감정적으로 힘들었다. 다들 불만이 많았다. 센터를 소장님을 봐서 참고 조사를 하였다.....(이하 생략)

- 슈퍼바이저 심층 인터뷰 중에서 -

터무니없이 낮은 조사수당도 이러한 불쾌감 고조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보사연의 자료에 의하면, 조사원은 가구의 기본정보를 담은 한 페이지의 <조사원 기재사항>을 작성하면 조사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한 부당 2천원을 받았으며, 설문완료의 경우에는 한 부당 5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방문교육지도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시간을 내어 조사를 진행했음을 감안하면, 이렇게 낮은 수준의 급여가 방문교육지도사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④ 조사원 선정과 업무량: 무응답오차 및 측정오차

위에서 지적한 조사 참여의 강제성 이외에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 문제는 조사원 선정 과정에서 외국인이 대거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본 진단팀은 약 60여명의 조사원들 중 40명 정도가 대한민국 국적은 있으나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들로 조사팀이 구성된 곳을 발견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들이 자국 출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출신 다문화가족도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조사원과 응답자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자명하다.

본 진단팀은 일곱 개 지역을 방문해 그 중 두 곳은 담당 공무원이 본래 업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조사원을 관리할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해 대신 하게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이들 담당 공무원들은 조사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으며, 슈퍼바이저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보사연이 배포한 슈퍼바이저 교육자료에 따르면, 한 조사원에게 60가구 정도 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진단팀은 현장 조사를 통해 한 조사원이 100가구 이상 방문한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조사원의 과도한 업무량은 응답의 질을 저하시킨다.

4. 수집자료 정확성 점검

1) 현장조사실태 검증: 면접진행상황 평가를 통한 적용범위오차 점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설문완료 여부, 접촉실패 사유, 미완료 사유, 조사대상자 조사원 기재사항에 단편적으로나마 기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진단팀이 보사연을 방문해 면담했을 당시 이를 자료화 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본 진단팀은 통계청에 요청해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하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확보할 수 없었다. 약 131,702 가구에 대한 기록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결과들의 정확성과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가늠할 수 있는 모집단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애초에 본 진단팀은 이 자료를 이용해 유효표본과 무응답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분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들을 비교해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의 대표성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표본추출을 실시해 그 표본의 분포와 최종 자료의 분포를 비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핵심적인 자료의 존재여부가 불투명하고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종 자료의 신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 게다가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된 가중치의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사원 기재사항> 자료 획득의 실패는 본 품질진단의 한계로 남게 되었다. 본 진단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대한 진단과는 별개로라도 이 자료의 확보는 향후 지속적인 사업의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2) 자료수집 형태 점검

① 자료수집과정 점검: 적용범위오차 및 무응답오차가. 면접진행상황 기록

본 진단팀이 보사연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가장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면접상황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진단팀은 단위무응답이 발생한 이유나 항목무응답이 발생한 이유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없었다. 단위무응답과 항목무응답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가 없으면 적용범위오차와 무응답오차가 증가된다.

<그림 2-1> 조사원 면접 상황 기록의 예

《 조사원 면접 상황 기록 》

※ 아래 질문은 조사원이 면접 직후 응답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체하지 말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118. 면접일시
 ____ 월 ____ 일 ____ 요일
 ____ 오전 ____ 오후 ____ 시 ____ 분부터 ____ 시 ____ 분까지

119. 설문지 기입시
 ____ (1) 조사원이 전부 기입 } (문항 119로 넘어갈 것)
 ____ (2) 응답자가 전부 기입 }
 ____ (3) 응답자가 일부 기입 }

119.1 (응답자 일부 기입시) 응답자가 기입한 문항번호
 ____ 번부터 ____ 번까지 ____ 번부터 ____ 번까지

... 중간 생략 ...

면접상황의 내용은 인적사항과 조사원 면접상황 기록도 포함해야 한다. <그림 2-1>은 한국종합사회조사가 사용하는 조사원 면접상황 기록의 예이다. 여기에는 조사시간, 응답방법, 응답자의 협조 및 관심 정도, 응답자 이외의 사람 존재여부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검표 및 확인조사: 적용범위오차

본 진단팀이 보건복지가족부와 보사연이 남겨둔 각종 문서들, 전문가 FGI, 연구담당자 면담,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현장조사,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보고단계에 대한 체계적 감독 및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조사원 기재사항>과 <조사표>에 대한 검표작업은 일선 슈퍼바이저들에 의해 대강이라도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으며, 조사원교육에서 단지 정직한 보고를 권고했을 뿐이다. 수집된 131,702 가구 모두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유효 설문인 73,669부의 일부라도 확인절차를 거치게 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완료된 설문이나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보고단계점검 부실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자료입력 및 처리과정 점검: 조정오차

가. 자료처리

보사연은 자료처리(data cleaning) 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문서도 제출하였다. <그림 2-2>은 보사연이 자료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한 예들을 보여준다. 본 진단팀은 보사연의 자료처리 관련 문서를 꼼꼼히 점검하고 그 내용이 부실함을 발견하였다. 즉 보사연의 가이드라인으로는 조사표 상의 navigational rules의 준수 여부만이 가능할 뿐 서로 관련된 변수들 간의 논리적 일관성에 대한 점검이 불가능하다.

<그림 2-2> 보사연의 자료정선 과정 예

<CARD 1>

col.27=2 ----> col. 34-46=88888888888888(13개)

*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확인

col.16-19 ≠ col. 54-57

col.20-21 ≠ col. 58-59

* 응답자 생년월일 조사원기재사항과 본인기재사항 확인

<CARD 2> Q30, Q30-1

col. 83=1 AND col. 84-90=0000000

col. 83=2 AND col. 84-90=1111111

col. 83=2 AND col. 84-90=9999999

*가족중 장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그림 2-3> 본 진단팀의 자료정선 과정 예

COMMENT III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CROSSTABS TABLES=B20 BY B21 B22/B21 BY B22.

CROSSTABS TABLES=B20 BY B23 B24 B25 B26 B27.

CROSSTABS TABLES=B20 BY B28 B29
/B28 BY B29.

CROSSTABS TABLES=B20 BY B39 B40 B44 B45 B47
/B20 BY B49 B51 B52
/B20 BY B56 B58 B59 B60.

CROSSTABS TABLES=B30 BY B31.

이에 본 진단팀은 <그림 2-3>에 나타난 것처럼 조사표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 간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행한 결과를 검토하였다. 조사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항들 간의 관계까지도 모두 점검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공표된 자료에는 아직도 확인 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나타났다. 가령 조사표 가구표에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보육복지육구 파악을 위한 설문에 답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아래의 통계자료의 서비스 충실성 진단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나. 가중치 적용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전수조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가중치적용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업의 연구진은 응답률이 예상보다 낮은 상황을 수정하기 위해 131,702개 <조사원 기재사항>의 정보를 근거로 국적별, 지역

별, 성별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131,702부의 <조사원 기재사항>에 기입된 자료가 그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가중치 변수를 구축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오류 발생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5. 통계자료의 서비스 충실성 진단

1) 공표자료 오류점검

본 진단팀은 보사연이 제공한 원시자료를 검토하여 공표자료에 오류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표자료가 가진 내적 일관성을 검토함으로써 오류가능성을 점검하였음을 밝힌다. 본 보고서에서는 오류점검을 위한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① 배우자 부모의 생존여부와 배우자 아버지의 등록장애인 여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부모의 생존여부를 묻는 질문과 배우자 아버지가 등록 장애인인지를 묻는 질문 간 교차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적 일관성에 문제를 보인 응답자가 상당부분 존재하였다. 배우자의 부모님 중 어머니만 생존한 상태이거나 부모 모두 사망한 상태라면 배우자 아버지가 등록장애인인 경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표 2-3>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만 생존해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89명, 부모 모두 사망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36명이 배우자의 아버지가 등록장애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3> 배우자 부모의 생존여부와 배우자 아버지의 등록장애인 여부

배우자 부모님 생존 여부	배우자 아버지의 등록장애인 여부				총합
	아니오 (등록장애인 없음)	예	비해당	무응답	
부모모두 생존	3,886	1,329	24,722	979	30,916
아버지만 생존	453	135	2,595	130	3,313
어머니만 생존	3,845	89	18,618	829	23,381
부모모두 사망	1,995	36	10,951	572	13,554
무응답	129	7	1,050	1,319	2,505
총합	10,308	1,596	57,936	3,829	73,669

② 아팠던 일수와 누웠던 일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조사표에는 응답자들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아팠던 일수와 그로 인해 누웠던 일수를 묻는 문항이 있다. 조사문항은 “지난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팠던 일수와 그 중 반나절 이상 누웠던(입원포함) 일수를 모두 적어주세요.”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이 위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아팠던 일수보다 누웠던 일수가 더 많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 변수 간의 교차표를 구성해본 결과, 아팠던 일수보다 누웠던 일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4>를 살펴보면, 총 125명의 응답자가 아팠던 일수보다 누웠던 일수가 더 많은 경우였다.

<표 2-4> 아팠던 일수와 누웠던 일수 간 비논리적 사례

아팠던 일수	아팠던 일수보다 누웠던 일수가 더 많은 경우
1	44
2	23
3	22
4	3
5	6
6	7
7	9
8	3
9	1
10	5
12	1
13	1
총합	125

③ 한국국적취득 여부와 선거참여 경험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응답자는 한국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표 2-5>를 보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910명이다. 또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선거참여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이 아닌 비해당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표 2-5> 한국국적 취득여부와 선거참여 경험

한국국적 취득여부	선거참여경험			총합
	있다	없다	무응답	
예	13,197	9,941	441	23,579
아니오	910	46,587	1,220	48,717
무응답	267	900	206	1,373
총합	14,374	57,428	1,867	73,669

④ 혼인상태와 배우자 및 가족관계

먼저, 이혼/사별 등이 아닌 현재 혼인중인 응답자에게 현 배우자와의 동거여부를 묻는 문항과 배우자와 이혼이나 별거중인 이유를 묻는 문항 간 교차표를 구성하였다.

<표 2-6> 현 배우자와의 동거여부와 이혼/별거의 이유

현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이혼/별거의 가장 큰 이유										총합
	외도	성격 차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 및 도박	정신 장애	기타	비해당	무응답	
예	3	5	1	3	1	1	0	1	66,233	28	66,276
아니오	0	0	0	0	0	0	0	1	1,614	1	1,616
비해당	292	746	160	451	289	190	43	190	820	206	3,387
무응답	1	6	3	4	1	4	0	2	1,728	641	2,390
총합	296	757	164	458	291	195	43	194	70,395	876	73,669

<표 2-6>을 살펴보면, 현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이혼이나 별거의 이유에 응답한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이혼중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배우자의 아버지와 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4명, 배우자의 어머니와 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2명,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8명이 있었다. 더불어 이혼이나 사별 중이 응답자 중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만족도와 배우자 형제, 자매와의 관계 만족도에 상당수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아래 <표 2-7>과 <표 2-8>에서 이혼 또는 사별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상당수가 만족, 불만족, 무응답이 아닌 비해당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2-7> 현 혼인상태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혼인상태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총합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비해당	무응답	
배우자있음	14,779	16,601	15,460	2,102	871	12,343	7,440	69,596
이혼	24	61	108	47	49	958	1,320	2,567
사별	38	75	95	22	18	388	184	820
무응답	10	8	9	2	1	52	604	686
총합	14,851	16,745	15,672	2,173	939	13,741	9,548	73,669

<표 2-8> 현 혼인상태와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혼인상태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총합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비해당	무응답	
배우자있음	15,500	19,153	20,950	2,280	1,048	3,137	7,528	69,596
이혼	34	70	190	55	61	1,127	1,030	2,567
사별	48	101	161	36	26	246	202	820
무응답	10	7	13	1	0	33	622	686
총합	15,592	19,331	21,314	2,372	1,135	4,543	9,382	73,669

<표 2-9>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이혼한 응답자뿐 아니라 사별한 응답자도 배우자의 취업여부에 응답하였으며, 사별한 사람 중 67명의 응답자가 현재 배우자가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결과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혼인상태와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를 묻는 문항을 교차한 결과에서도 이혼이나 사별한 응답자가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9> 혼인상태와 배우자 취업여부

혼인상태	배우자의 취업여부			총합
	예	아니오	무응답	
배우자있음	57,682	10,133	1,781	69,596
이혼	577	650	1,340	2,567
사별	67	458	295	820
무응답	228	87	371	686
총합	58,554	11,328	3,787	73,669

혼인상태 별 지난 일년간 배우자 가족모임 참석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0> 혼인상태와 배우자 가족모임 참석 빈도

지난 일년 간 배우자 가족모임 참석빈도	혼인상태				총합
	배우자있음	이혼	사별	무응답	
전혀없음	6,140	661	223	50	7,074
일주일두번이상	2,726	17	7	4	2,754
일주일에한번	4,380	19	20	9	4,428
한달에1~2번	15,133	47	60	24	15,264
일년에2~3번이상	26,627	89	143	39	26,898
일년에한번	7,086	71	73	21	7,251
비해당	1,805	969	159	63	2,996
무응답	5,699	694	135	476	7,004
총합	69,596	2,567	820	686	73,669

<표 2-10>에 의하면 현재 이혼이나 사별한 응답자도 배우자의 가족모임에 활발하게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한국에서의 일과 직장 내 차별경험

한국에서 취업경험을 묻는 질문과 직장/일터 내 차별 경험에 대한 문항을 교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1> 취업경험과 직장 내 차별경험

한국에서의 취업여부	직장/일터에서 차별당한 경험						총합
	심한 차별받았다.	조금 차별 받았다	별로 받지 않았다	전혀 받지 않았다	해당없음	무응답	
현재 일하고 있다	1,546	4,709	2,117	1,578	15,960	1,941	27,851
현재는 하지 않으나 한 적 있다.	1,098	2,524	1,067	716	8,295	1,428	15,128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	279	578	420	968	23,381	3,645	29,271
무응답	42	58	33	19	760	507	1,419
총합	2,965	7,869	3,637	3,281	48,396	7,521	73,669

<표 2-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일한 적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많은 수가 직장 내 차별경험에 대해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사자료를 점검하면서 문제로 두드러진 부분 중의 하나가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교차하였을 때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갖고 있음으로써 내적 일관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조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데 있었다.

⑥ 응답범주 부호화 필요성

응답범주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수 변수 중 8, 9값은 각각 비해당과 무응답에 해당하나 코드화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사자료를 점검하면서 문제로 두드러진 부분 중의 하나가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교차하였을 때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갖고 있음으로써 내적 일관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조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데 있었다.

<표 2-12> 자녀수와 자녀존재 여부

자녀수	자녀유무			총합
	자녀있음	자녀없음	무응답	
1	26,914	0	0	26,914
2	13,248	0	0	13,248
3	2,505	0	0	2,505
4	497	0	0	497
5	94	0	0	94
6	25	0	0	25
7	5	0	0	5
8	0	24,560	0	24,560
9	154	0	5,667	5,821
총합	43,442	24,560	5,667	73,669

⑦ 교육년수 변수의 누락

자료를 검토하면서 가장 의아한 점은 교육년수(변수명 A22)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조사표에는 나와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 교육 관련 정보는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최종학위 뿐이다. 하지만 최종학위는 교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이 자료가 외국인으로부터 수집되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출신국가별로 교육체계가 달라서 같은 고등학교 졸업도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년수 변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⑧ 모르겠다, 응답거부, 비해당 간의 불분명한 구분

전국다문화실태조사의 자료를 살펴보면, 사회조사방법론에서는 모르겠다(Don't Know), 응답거부(No Answer), 비해당(Not Applicable)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특히 모르겠다와 응답거부 간의 구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조사표 구성의 오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자료 생산 과정에서 이를 보다 세심하게 다루었어야 했다.

2)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

보사연이 제공한 전산정보관리지침 중 3장 자료의 관리 및 활용, 제 8조 5항에 따르면, 자료를 대출 또는 양여(내용복제)할 때에는 자료사용료를 징수하며 “다만, 정부기관, 비상근임원, 연구자원위원과 원장의 승인을 얻은 기관(개인포함)에 대하여는 무상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들은 자료를 필요로 할 시, 보사연에 자료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일반 이용자의 자료이용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규정이 일반 이용자의 자료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이나 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등 타기관의 경우 기관회원에게는 무료로 자료를 제공하고 일반회원에게는 약간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반 이용자의 경우뿐 아니라 조사에 참여한 일선 공무원, 지자체의 자료이용에도 문제는 있다. 사실상 이번 조사에 지역단위 공무원의 협조를 이끌어 내게 된 것은 시·도에서도 조사자료를 이용하고 더 작은 지역단위에서도 그 지역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복지욕구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유인기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도 단위의 자료는 제공되고 있으나, 더 작은 지역단위별 자료제공에 보사연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조사에 협조했던 공무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는 보사연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자료의 이용에 대한 편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본 진단팀은 통계이용자가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① 자료 이용의 수월성, ② 자료 공표의 충실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① 자료이용의 수월성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는 보사연의 웹사이트(www.kihasa.re.kr)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용자는 보사연에서 요구하는 자료요청공문, 연구계획서, 서약서, 재학증명서(대학생과 대학원생만 해당)를 작성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변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자료 공개 유무를

결정하여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표 2-13>과 같다.

<표 2-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복사료 기준

레코드량	복사료(원)
10,000 미만	300,000
10,000 이상~20,000 미만	500,000
20,000 이상~50,000 미만	700,000
50,000 이상	900,000

* 1 record = 80 column, * 1 column = 1 character

** 출처 - 보사연.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인의 경우(기타 연구원을 포함)에는 레코드 당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보사연의 가격기준을 약 73,699 표본을 포함하고 214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에 적용해 계산해 보면 아래의 <표 2-14>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표 2-14>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의 변수는 그 column 수가 2에서 7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900,000원의 돈을 내고 모든 자료를 얻지 않는 한 연구자가 필요한 변수를 최소화하여 자료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표 2-14> 일반이용자 사용료

레코드량	복사료(원)	구입할 수 있는 변수의 수
10,000 미만	300,000	변수 10개(9,125레코드)
10,000 이상~20,000 미만	500,000	변수 21개(19,162레코드)
20,000 이상~50,000 미만	700,000	변수 54개(49,275레코드)
50,000 이상	900,000	총 변수 214개

*변수 당 column 수를 1로 제한했을 때의 산출 가격.

**표본의 수를 73000case로 계산

일반인과는 달리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경우, 보사연은 무료로 자료의 80%까지 제공한다. 다시 말해, 학생은 총 214개의 변수 중 171개의 변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자료를 얻고자 한다면 학생도

900,000원의 자료복사료를 지불해야 한다.

② 공표자료 내용 소개의 충실성

작성된 통계에 대한 정보가 충실하게 소개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자료이용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사회조사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오차는 쉽게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조사방법 및 조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료가 갖는 한계와 분석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가늠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사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자료 소개는 조사방법 및 조사과정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조사방법에 대한 요약이나 메타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조사방법과는 무관한 보고서의 목차만이 게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회조사자료들이 메타자료를 통해 자료의 정보와 조사방법을 자세히 소개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조사방법, 조사표, 이용자 가이드 등을 웹사이트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조사기간, 조사수행팀, 조사절차 등의 자료수집과정에 대한 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경우, 코드북과 변수의 내용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자료수집과정에 대해 알기 어렵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조사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보고서에 나와 있는 조사방법 및 조사과정에 대한 내용조차도 너무 짧으며 실질적인 정보를 주지는 않는다.

간단히 말해,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자료는 지나치게 비싼 이용료가 부과됨으로써 이용자들의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조사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연구의 촉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조사결과보고서 검토

조사결과보고서의 문제점은 본 보고서의 제4장에 보다 자세하게 논의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조사결과보고서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관한 내용만 논의하도록 하겠다. 먼저 조사결과보고서에서 밝힌 2009년 실태조사 연구의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일반특성 및 취업, 경제수준,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등을 조사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교육·지원 등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다문화가족 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다.” <출처: 조사결과보고서, p.29>

이러한 목적 하에 시행된 연구결과는 보사연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된 각 부분의 기본적인 통계치를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일반 현황 및 한국어 능력, 주거 및 경제상태와 삶의 질 만족도, 취업,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양육실태,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과 복지욕구 등 조사된 문항 전반을 검토하고 부분별 기본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공표자료의 오류점검에서 살펴보았듯이, 변수 간 내적 일관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내적 일관성이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각 변수별 빈도를 살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보고서가 각 주요 변수들의 통계치를 연령별, 체류기간별, 혼인상태 별 등 각 주요 인구학적 배경변수에 따른 빈도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읽음으로써 조사된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인구학적 배경변수를 일률적으로 선택하여 각 변수의 빈도 및 통계치를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기보다는 좀 더 대상 변수의 특성에 맞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를 더욱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진단팀은 몇 가지 예를 소개함으로써 조사결과보고서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한국어 읽기/쓰기 능력과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는 응답자들의 한국어 읽기/쓰기 능력이 거주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 별 등으로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어 읽기 능

력과 쓰기 능력 간의 비교나 한국어 읽기/쓰기 능력이 갖는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성은 보여주지 않는다. 특히 한국어 읽기/쓰기 능력은 응답자의 문화적응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써 문화적응도는 이민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 및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과 깊은 연관을 가질 수 있다. 한국어 읽기/쓰기 능력이 삶의 만족도, 차별경험, 직업상 고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 읽기/쓰기 능력이 사회적 연결망, 즉 응답자의 사회생활에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도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다.

②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조사결과보고서는 결혼이민자의 모국가족 및 현재 본인가족의 다른 모국가족 및 한국가족과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의 변화를 출신국 별로 잘 보여주었다(조사결과보고서 표 6-43). 즉, 현재 응답자의 한국가족과 모국의 가족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비교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를 삶의 만족도 수준과 함께 제시하여 모국가족과 한국가족에 대한 주관적 경제상태 차이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삶의 만족도와 갖는 상관성뿐 아니라 취업욕구 및 복지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관적 경제상태의 차이를 출신국 별뿐 아니라 교육수준 별, 입국목적 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③ 가족관계 만족도

결혼이민자의 성별, 출신국별, 거주지별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가족관계 만족도가 다른 변수들과 같은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광의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한국 내 사회활동, 모국인 친구모임 참여, 빈곤경험, 문화적응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④ 분석적 연구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각 주제 별 빈도표를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욕구나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두 가지 변수를 교차함으로써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각 주제별 특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을 시설이나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를 국적별, 연령별, 교육수준 별로 비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국내외의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조사

제 1 절 국내의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조사

1. 국내의 다문화가족 조사 현황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이주정책의 변화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수립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다문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통계적 기초자료 수집은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진단팀은 그간 국내에서 수행된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조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다문화 관련 통계 조사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²⁾

국내의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조사주체를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계로 나뉜다. 먼저, 정부의 유관 부처들은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의 국제결혼 가족 복지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05), 국내거주 외국인 실태조사(행정안전부, 2006)³⁾,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06),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8)등을 시행한 바 있다⁴⁾.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의 광역자치단체들도 산하 연구원에 의뢰하여 다문화가정 혹은 결혼이민자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각 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들로는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사회적응지원 실태조사(2006),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2007), 경기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방안연구(2009), 경북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2007), 경남의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08), 전북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보육실태조사(2009), 전남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2009), 충북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2008), 충남 다문화가정 실태조사(2008)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계에서는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에 관한 조사(김진희·박옥임,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과 양육행동에 관한 조사(나동석·박종인, 2006), 결혼이민자가정 한

2) 국내에서 시행된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조사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2 <국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현황 및 내용>을 참고할 것.

3) 행정안전부에서는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전국거주외국인기초실태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009년 11월).

4) 이외에도 결혼이민자 관련 국내통계에는 체류외국인통계(법무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행정안전부)등이 있다.

국민 남편의 가족관련 가치관 및 문화적응태도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장은정·박정윤, 2007),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추현화·박옥임·김진희·박준섭, 2007)가 이뤄졌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개인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조사들이 존재한다.

2. 다문화가족 조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

<표 3-1>은 조사기관별 다문화가족 조사의 목적을 보여준다.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중앙부처의 경우 부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네 개의 조사 모두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반영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목적의 유사성은 여덟 개 광역자치단체에 의해서 수행되어 온 조사들에서도 나타난다. 간단히 말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서 수행된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조사는 기초적인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는 실태조사 수준에 머물러있다. 오직 학계에서 수행된 조사만이 특유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조사목적의 중첩은 국내 다문화 또는 이민의 짧은 역사를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실태 파악 수준에서 조사가 수행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후속적인 조사가 행정안전부를 제외하고 진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국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시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표 3-1> 조사기관별 조사목적

조사기관(실시년도)	조사목적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2005)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사회복지와 보건, 의료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 지원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2006)	자치 단체별로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향후 지역사회통합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여성가족부(2006)	전국적으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사회문화적 기본욕구를 파악하여 결혼이민자 가족 중장기 지원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2008)	다문화사회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주민 관련 문화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 제공
지방자치단체	
강원도(2006)	도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생활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시책 마련
경기도(2007)	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현황과 전반적인 가족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욕구를 분석하여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 정책방안 모색
경기도(2009)	도내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현황과 취업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방안제시
경상북도(2007)	도내 결혼이민자가족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적응사항, 가정생활 만족도, 배우자와 자녀, 주거를 같이 하는 기타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와 결혼이민자가족의 정책욕구 파악
경상남도(2008)	도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요구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개인적 특성·가족 특성 등을 반영한 정책 및 사업을 제안하고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각종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전라북도(2009)	도내의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지원방안 모색
전라남도(2009)	도내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과 이의 전달체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도출
충청북도(2008)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기본적인 현황 외에 경제생활, 부부관계, 한국에서의 적응과 정착, 자녀관계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 및 정책과제 발굴
충청남도(2008)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정의 언어능력, 생활정도의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사회에 조기 적응, 정착 및 지원시책 자료 등으로 활용
학계	
김진희·박옥임(2006)	전남의 농촌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 만족스러운 가족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나동석·박종인(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으로 배우자 지지와 배우자 외 지지, 그리고 결혼만족이 양육행동과 어떠한 수준으로 상관관계가 있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행동에 영향력 분석
장은정·박정윤(2007)	결혼이주여성 남편들을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결혼적응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인 남편의 가족관련 가치관과 문화적인 태도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부부간 원만한 결혼적응 형성과 문제 예방을 위한 가족복지적 접근
추현화·박옥임·김진희·박준섭(2007)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결혼적응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과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파악

3. 다문화가족 조사의 조사대상과 규모에 따른 분류

<표 3-2>는 조사기관별 조사대상, 규모, 현지조사 기간 등을 보여준다. 조사대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내의 다문화가족 조사는 여성결혼이민자 혹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같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중에서, 행정안전부(2006)의 조사는 국적이 없는 외국인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전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2008)의 조사는 20세 이상의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한 조사는 그 대상이 모두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학계에서 수행된 조사들도 모두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이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학계에 의해 수행된 조사들 대부분은 표본조사이지만, 행정자치부, 강원도, 경북, 충북, 충남의 조사는 전수조사이다. 따라서 조사의 규모는 200명 이하의 표본조사부터 50만 명이 넘는 전수조사에 이르기까지 조사들 간 편차가 큰 편이다. 특히 학계에서 시행된 조사들은 표본의 크기가 작다. 반대로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한 조사들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큰 편이다.

4. 다문화가족 조사의 내용에 따른 분류

<표 3-3>은 조사기관별 조사내용을 보여준다. 조사별로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조사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복지서비스, 결혼생활 그리고 국제결혼 및 입국과정이라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오직 전북과 전남에서 수행된 조사가 각각 자녀양육 및 보육시설과 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특화시켰을 뿐이다. 조사내용의 증첩은 사회적 비용의 상승과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상술했듯이, 이는 국내의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연구가 초보적인 수준이고 대부분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향후 3년마다 실시될 예정인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방향과 관련해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향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지금까지 유관부처와 광역자치단체들이 산발적으로

로 수행한 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던 조사내용들을 포용하여 전국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수준에서 그 변화추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별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의 결과는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2> 조사기관별 조사대상, 조사규모, 조사기간

조사기관 (실시연도)	조사대상	조사규모 (가구/명)	조사기간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2005)	여성결혼이민자 + 한국인 배우자 가구	954가구	3주
행정안전부(2006)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과 취득한 외국인 (결혼이민자 65,243명, 자녀 25,246명 포함)	536,627명	4주
여성가족부(2006)	결혼이민자 + 한국인 배우자 가구	1,177가구	7주
문화체육관광부 (2008)	만 20세 이상의 한국거주 이주민 (이주노동자 560명, 결혼이민자 264명, 새터민 102명)	927명	12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2006)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1,706명	9일
경기도(2007)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1,013가구	12주
경기도(2009)	경기도비 지원으로 한국어교육 및 취업교육을 수강중인 여성결혼이민자	571명	3주
경상북도(2007)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3,469가구	2주
경상남도(2008)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411명	3주
전라북도(2009)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266명	4주
전라남도(2009)	도내 다문화 가족	230가구	6주
충청북도(2008)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2,522명	7주
충청남도(2008)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정	3,718가구	3주
학계			
김진희 · 박옥임 (2006)	전남의 농촌과 도시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127명	8주
나동석 · 박종인 (2007)	충북에서 자녀양육 경험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174명	4주
장운정 · 박정윤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 (대전 · 인천 광역시,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기도 등)	215명	8주
추현화 · 박옥임 · 김진희 · 박준섭 (2007)	전남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	213명	8주

<표 3-3> 조사기관별 조사내용

조사기관(실시연도)	조사내용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결혼생활, 사회복지 수요·욕구, 보건·의료 수요·욕구, 사회·인구학적 변수
행정안전부(2006)	지자체별 거주외국인 수(유형별·성별·국적별·지역별),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지원기구·단체 현황,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여성가족부(2006)	결혼이민자 가족의 형성과정, 가족관계, 경제활동, 빈곤실태, 사회적응·통합,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요소, 문화생활 실태, '아동'의 사회적응,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학대 피해 실태, 혼인 해체의 양태, 이혼 또는 별거, 국내의 결혼이민자 가족 통합 서비스 분석
문화체육관광부(2008)	여가, 문화예술향유, 관광/여행, 대중매체, 정보획득경로,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역사유적지 및 지역축제, 모국의 정체성, 이주민(이주민 가족) 차별, 요구사항 및 기타, 응답자 일반사항
지방자치단체	
강원도(2006)	일반적 특성, 지역사회적응 실태, 복지욕구, 잠재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가족관계, 국제결혼 과정
경기도(2007)	응답자 일반사항, 결혼과정, 부부·가족관계, 가족생활, 자녀양육, 사회 및 문화생활, 취업생활, 사회보장 및 의료실태, 각종 서비스 이용실태와 욕구
경기도(2009)	한국어교육 및 취업교육 실태, 인적자본 실태, 취업경험 및 욕구, 창업욕구, 경제적 만족 수준 및 응답자 특성
경상북도(2007)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 특성, 국적관련 특성, 결혼과정, 경제활동 특성, 한국적응 과정, 가정생활, 자녀양육 실태
경상남도(2008)	결혼생활, 자녀양육, 한국생활 실태와 교육 및 취업, 인구 사회학적 변수
전라북도(2009)	가족관계 및 결혼생활, 경제활동, 지역사회 적응 및 네트워크 활용, 자녀양육 환경 및 태도, 보육시설 이용현황, 보육시설 이미용 실태 및 정책수요, 보육서비스지원요구
전라남도(2009)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보 획득 방법, 서비스 이용 경험, 프로그램내용, 서비스전달체계, 가정생활의 만족도, 사회 생활의 적응도, 문화적 욕구 충족도
충청북도(2008)	인적사항, 결혼사항, 한국에서의 적응과 정착, 경제활동, 부부 및 자녀관계
충청남도(2008)	결혼이민자의 주요현황, 결혼관련 사항, 한국에서의 적응사항, 가족관련 사항, 프로그램 추진 및 희망사항 등
학계	
김진희·박옥임(2006)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아존중감, 부부의 의사소통, 가족갈등, 생활만족도
나동석·박종인(2007)	사회적지지, 양육행동, 결혼만족
장은정·박정윤(2007)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족관련 가치관, 문화적응 태도, 결혼적응
추현화·박옥임·김진희·박준섭(2007)	사회·인구학적 변인, 주관적 차별감,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변인,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적응도

제 2 절 외국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현황과 교훈

1. 외국의 조사 현황

본 진단팀은 외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관련 통계조사 체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표 3-4>는 한국, 대만, 일본, 호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민자 조사의 특징을 보여준다.

① 대만

대만의 대표적인 이민자 관련 통계로는 통계청과 내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가 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센서스’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 사항, 5년 전 거주 장소, 가정 지원, 직업, 학교나 직장의 위치, 생활지원, 출신(부족) 등의 항목들을 담고 있다(2000년 기준). 대만의 인구센서스⁵⁾는 10년을 주기로 수행되며, 수집된 자료들은 대만의 장기적 국가계획 수립과 사회복지 및 주택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2000년 인구센서스는 2003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인 ‘외국인배우자 및 중국인배우자 생활실태조사’(年外籍與大陸配偶生活狀況調查)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2003년 전수조사의 낮은 응답률과 시간과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2008년 대만의 ‘외국인배우자 및 중국인배우자 생활요구조사’(外籍與大陸配偶生活需求調查)는 표본조사로 전환되었다. 국가 기관이 실시하는 전국조사들 이외에,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다양한 조사들도 존재한다.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서비스 센터와 외국인 생활 서비스 콜센터⁶⁾, 외국인 배우자 전용 서비스 콜센터⁷⁾에 접수된 문의사항과 횡수,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이민자 서비스 방면의 조사(移民照顧輔導成果統計表, 1999)가 좋은 예이다.

5) 대만의 인구센서스는 1956년부터 2000년까지(1956, 1966, 1980, 1990, 2000) 총 5차례 실시되었으며, 1970과 1975년에는 표본조사로 실시되었다.

6) 외국인 생활 서비스 콜센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의내용은 주로 거주, 생활, 비자발급과 관련된다.

7) 외국인 배우자 콜센터는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로 총 6가지 언어로 서비스가 되며, 문의내용은 주로 거주, 법률, 특별서비스(특수 대상에 대해 방문 등을 통하여 도움을 주는 서비스)와 관련된다.

② 일본

일본 통계기구의 행정은 크게 중앙과 지방정부의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다. 중앙정부통계조직인 총무성 통계국은 지방정부가 보고하는 정보를 총괄하고, 각 지방정부 통계기구는 대규모 통계조사의 실사를 담당하여 통계조사의 기반을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의 경우, 총무성 통계국이 '인구센서스'에 이민자 관련 항목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에서는 다문화공생 관련 시책으로 '다문화공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민자 관련 항목이 포함된 대표적인 조사통계인 인구센서스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본사항, 외국인 포함 세대의 가족유형, 노동조건, 산업, 직업, 고용 지위 등의 항목들을 담고 있다(2005년 기준)⁸⁾. 이 자료는 일본에 거주하는 인구·세대의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행정 시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인구센서스는 5년을 주기로 실시되며, 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조사가 원칙이다. 다문화공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는 '다문화공생 실태조사'는 한국의 다문화가족실태 조사와 달리, 각 지역 내 일본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과 일본인이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현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고,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신주쿠구의 조사표는 기본적 사항들과 생활전반, 언어, 일상생활, 지역교류, 정보제공 상담체제, 재해 시 긴급협력, 다문화공생 마을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5>는 일본 통계청의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실시된 다문화가족 조사의 현황을 간략히 보여준다. 많은 조사들이 다문화공생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주쿠구, 오타구, 이타바시구에서는 설문조사와 함께 심층 면접조사가 실시된다. 심층 면접조사는 외국인, 일본인,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설문조사기간보다 조사대상이 작고(신주쿠구: 40명/40명/20명, 오타구 21명/19명/20명, 이타바시구 10명/10명/10명), 조사기간이 길다.

8) 일본의 2000 인구센서스에서 이민자 관련 항목은 기본적 사항과 외국인이 있는 세대의 가족유형, 부부(남편, 아내의 국적 관련 문항), 노동 조건, 산업, 직업, 고용지위 그리고 외국인 인구 이동으로 구성되었다 (<http://www.stat.go.jp/>).

<표 3-4> 한국과 외국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사례 비교

	한국		대만		일본		호주
	조사시기 (주기)	통계청	2003년 -2003 외국인배우 자 및 중국배우자 생활실태 조사	2008년 -2008 외국인배우 자 및 중국배우자 생활요구 조사	2009년 - 기초자치단체 (신주쿠구)	2006년(5년) -2006 인구센서스	
실사기관	보사연	통계청	내정부	통계청	신주쿠구	통계청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조사 · 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응답자의 자기입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조사 · 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응답자의 자기입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조사 · 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응답자의 자기입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조사 · 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응답자의 자기입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조사, 면접조사 · 표본조사(외국인·일본인 구분) · 2003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09년 다문화생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조사 · 조사원이 가구에 배부·수거하는 자기기입식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의 현황, 문제점의 심층분석 - 다문화가족의 교육지원 등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다문화가족 특성별 맞춤형 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발전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더불어 사회복지 및 주택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배우자와 중국출신배우자의 대만에서 생활실태, 출산상황, 취업 등 관련 자료가 불완전함으로 조사를 통해 관련 법적 및 지도조치 등의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인구·세대의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 시책의 기초자료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실시 됨.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과 일본인이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초자료를 통하여 앞으로의 행정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하는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정부와 다른 사용자들에 계획, 관리, 정책 개발 및 평가에 이용(국내 거주하는 이민자 포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사항, 취업,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 부문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사항, 5년 전 거주 장소, 가정지원, 직업, 학교나 직장의 위치, 생활지원, 출신(부족)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사항, 가족구성원 정보, 직업과 취업상황, 개인생활 적응사항, 생활환경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사항, 외국인 있는 세대의 가족유형, 노동 조건, 산업, 직업, 고용 지위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사항, 생활진반, 언어, 일상생활, 지역교류, 정보제공 상담체제, 재해시 긴급협력, 다문화공생마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사항, 출신, 언어, 종교, 교육, 복지, 산업, 직업, 주거로 구성 	

<표 3-5> 일본 지방자치정부의 다문화가족 조사

	이바라키 현	돗카이치 시	신주쿠 구	오타 구	이타바시 구
조사명	브라질인 생활실태조사	외국인 시민 실태설문조사	다문화공생실태조사	다문화공생실태조사	다문화공생실태조사
조사기간	2009.8~12	2009.1.23~2.6.	2007.9.28~10.19	2009.10.1~2010.10.22	2009.5.18~5.22
조사대상	브라질인 237 일본인 19	만18세 이상 브라질인 1,862명	외국인 20세 이상 5,000 일본인 20세 이상 2,000	외국인 구민 2,000 일본인 구민 1,000	외국인 구민 5,000 일본인 구민 2,000
조사방법	표본조사 대면에 의한 청취조사	표본조사 우편조사(포르투갈,일본어)	표본조사 우편조사	표본조사 우편조사(6가지 언어)	표본조사 우편조사
조사내용	고용, 교육	거주기간, 지역, 활동, 육아, 교육, 일본어학습, 업무 등 19항목	생활의 실현, 재해 시 긴급협력	생활전반, 일본어학습, 육아, 교육, 국제교류, 마을 만들기, 노동, 의료	기본항목, 언어, 지역생활과 활동, 재해 등 응급상황대응, 육아, 교육, 지역요구

③ 호주

이민관련 통계가 비교적 정확하고 상세하게 관리되는 호주의 경우, 대표적인 이민자 관련 통계로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센서스’가 있다.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센서스는 기본적 사항, 출신, 언어, 종교, 교육, 복지, 산업, 직업, 주거 등의 항목들을 포함한다. 호주의 인구센서스는 5년을 주기로 수집되며, 수집된 자료들은 호주에 거주하는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정부의 계획, 관리, 정책 개발 및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민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호주사회과학자료원(Australian Social Science Data Archive), 통계청 등 세 개 기관이 연계하여 이민자와 관련된 기초통계 자료를 연방 및 주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학술기관과 일반인에게도 무상으로 배포함으로써 활발한 이민연구가 이루어졌다.

2. 외국사례가 한국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주는 교훈

위의 세 나라 사례가 한국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주는 교훈을 간단하게 국가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만

대만이 센서스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결혼이민자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가 표본조사로 전환한 사실은 한국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수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작업이므로 정책입안가들이나 전문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사표의 분량이 대체적으로 짧은 편이다. 즉 전수조사는 간단한 현황과약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확한 표본추출, 양질의 조사원 확보, 철저한 조사원 교육, 세밀한 자료수집과정 관리, 자료처리 및 자료정선 등 양질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만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표본조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다. 지난 2009년 한국의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된다는 이유로 전수조사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대만의 사례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② 일본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조직체계에 대해 시사점

을 제공해준다. 중앙정부의 통계국은 전국의 이민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현황과 정책육구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를 따로 수행하는 일본의 이원화된 통계체계를 한국이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향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기획할 때 참고할 만한 방법이다. 특히 조사표 구성과 현지조사관리체계에서 더욱 그러하다. 즉 전국적 수준에서 반드시 파악되어야 하는 핵심 문항을 선정하고 16개 시·도별로 지방정부가 필요한 지역에 특화된 문항을 취합하여 16개 종류의 조사표를 각각 구성해 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일이다. 그리고 지역의 조사관리를 각 광역정부에 일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사내용에 있어서 전국과 지역 수준에서 필요한 사항이 동시에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중앙과 지역 조사조직의 불협화음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③ 호주

호주는 이민으로 출발한 국가이기 때문에 센서스를 통해서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호주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그러한 정보의 공개 부분이다. 호주의 이민자통계를 탐색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정보의 방대함과 상이한 자료들을 하나의 체계 안에 유기적으로 통합시켜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현재 한국에서는 다양한 기관에 의해 다양한 주제의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조사가 진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의 조사결과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료들을 하나 또는 복수의 기관에서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면 정책입안가들과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 4 장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진단팀은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향후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조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확한 모집단 명부의 확보가 필요하며 표본 조사를 실시하면 저소득층, 입국 1-3년차 등 이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되었던 집단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전문적인 조사원 고용과 응답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3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 때마다 새롭게 틀을 짜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매년 또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변경하고, 반복적으로 묻는 설문과 각 년도에 집중적으로 질문할 주제를 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제1절 연구기획

1. 연구내용과 범위 설정: 다문화가족 개념 및 조사범위의 적절성

1)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정의

보사연이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초 목표모집단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167,090명으로 이는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한 수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7,090명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154,333명으로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다문화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출처: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제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출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제2조와 4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부)또는 모(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2)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3)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적법>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과 「국적법」 제4조에서 정의하는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즉,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으로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귀화로 인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이에 반해 다문화가족이란 가족성원 중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가족, 즉 결혼이민자의 한국출생

자녀나 배우자 및 다른 가족성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결혼이민자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술하였듯이, 보사연의 조사결과보고서에서 밝힌 최초 목표모집단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한 수이므로 정확하게는 결혼이민자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다른 가족성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결혼이민자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사대상에 대한 정의가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이 결혼이민자인지 다문화가족인지에 따라 조사의 목표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을 조사한다면 결혼이민자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조사도 부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물론 결혼이민자를 연구대상으로 정할 경우에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 조사는 필요하지만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혼동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진단팀은 다문화가족 전문연구자들의 제안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가 타당한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 간의 결혼으로 구성된 가족은 다문화가족이 아니다. 즉,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정의가 너무 협의의 정의가 아닌가 의문이다.

더불어 현 법령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현재 국적취득 여부에 상관없이 외국인으로써 한국인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게 된다. 결혼이민자의 범주에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문화적응도도 높은 사람들도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체류기간을 어디까지로 한정해야 하는가의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체류기간을 고려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일반적인 정의에는 입국시기 혹은 체류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은 가구성원 중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가족이라 정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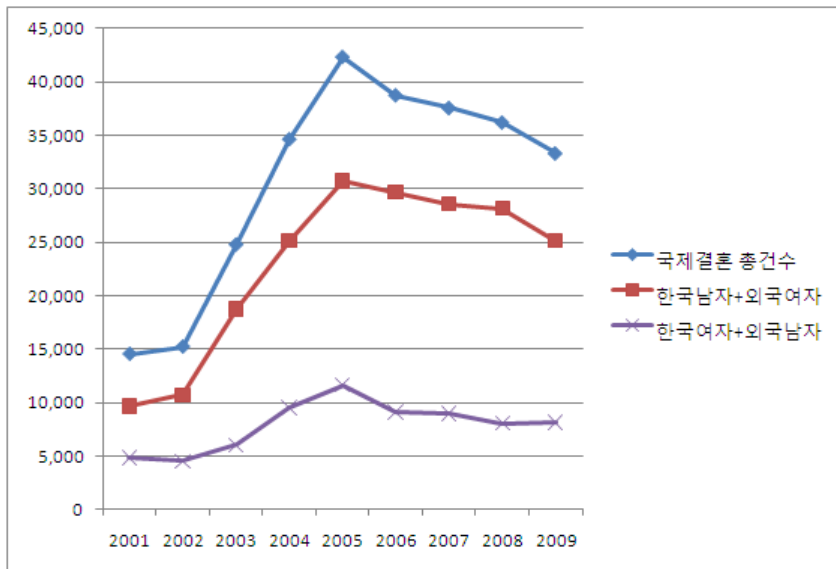
2) 개선방안

향후 조사를 위해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기

보다는 조사대상 및 명칭을 다문화가족으로 명확히 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결혼이민자의 복지욕구와 배우자의 복지욕구는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성원, 결혼이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를 모두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국제 결혼이민자의 전체 모집단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사실상 90년대 이후에 발생한 국제결혼으로 대상을 좁힐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09년 자료와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입국년도는 2005년 이후가 전체의 54.1%로 가장 많았다. 1990년 이전에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1.1%,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3.3%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의 증가추세와도 일맥상통한다. 1990년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가 전체 결혼 건수의 1.2%를 차지했던 것과는 달리 1995년에는 3.4%, 2003년에는 8.4%에 이르렀고 2005년에는 13.6%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07). 이러한 비율은 2006년에는 11.9%, 2007년에는 11.1%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7). 2000년대에 나타난 국제결혼건수의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 국제결혼건수의 변화추이



2009년 결과와 통계청의 조사는 한국의 결혼이민자의 증가추세가 1995년 이후에 가속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이전에 입국한

결혼이민자들은 1995년 중반 이후에 입국한 결혼이민자에 비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대상을 정할 때는 입국시기에 따른 한정을 두지 않되, 90년대 이후에 형성된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조사가 완료된 후에 진행할 분석적 연구에서 90년대 이후에 생성된 다문화가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문화가족에 조사의 초점을 맞춘다면, 결혼이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까지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라는 개인단위뿐 아니라 가구단위의 조사항목도 필요할 것이다. 필요한 조사영역에 대한 논의는 제2절의 “조사표 및 항목구성”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이에 기반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청의 역할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공하는 데 찾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배경과 더불어 입국시기와 결혼시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통계를 제공한다면 조사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범위 설정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양하고 넓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지는 않다. 긴 조사표로 인한 면접시간의 증가는 응답거부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나열은 면접의 집중력을 저하시켜 자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조사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보와 특정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가능한 자료구축 모두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필수적으로 파악해야하는 반복핵심설문과 특정주제모듈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설문과 ISSP나 EASS 등의 주제모듈을 통합해 핵심설문은 매년 조사하면서 매년 다른 주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모집단 명부(표집틀)의 정확성

1)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67,090명의 명부를 입수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대상이 아닌 자를 제외한 154,333명을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라 명명하였다. 보사연은 이 명부를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설정하고 모든 가구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그 정확성에 문제가 많음을 발견하였다. 즉 명부에 있는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서울 등과 같은 대도시 거주 다문화가족과 중국 한족의 정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 진단팀의 현장점검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발굴조사를 통해 신규로 명부에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나 최근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민자들이 보건복지가족부 명부에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보사연이 이 자료를 모집단 명부로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보다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한 적용범위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모집단 명부 구축

모집단 명부에 목표모집단의 일부가 누락되었을 경우 연구자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한다. 첫째, 목표모집단을 재정의하여 표집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둘째, 애초에 의도했던 목표모집단을 대표하는데 있어 적용범위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다. 보사연이 수행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불가피성은 향후 조사에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2009년 실태조사에서 13만 1천여명의 조사원 기록사항을 복원하여, 2010년 11월부터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조사원 기록사항을 검토하면, 모집단 명부를 구축하는 작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 조사문항에 각 가구원의 출신국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전국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획득한 다문화가족 정보를 기본 모집단 명부로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한다면 2009년의 모집단 명부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보를 비교해가며 모집단 명부를 만들어 간다면 그 정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명부를 최소 5년 단위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축된 명부를 매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보완, 향후 조사를 위해 최신 자료로 갱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사주기의 적절성

1) 조사주기의 문제점

2008년 3월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3년 주기의 실태조사가 국내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추이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3년에 한 번 실시되는 실태조사로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표방했던 하위집단별 및 계층별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긴 시간을 두고 조사가 실시되면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황과 실태의 파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3년 간격의 실태조사가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 심각하게 조사주기를 1년이나 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국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3년 주기로 정해져 있는 조사주기를 과감하게 매년 또는 격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 때마다 새롭게 접근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를 매년 또는 격년 실시하는 조사로 변경하고, 반복적으로 묻는 설문과 각 년도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주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 참여자 및 일반 연구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각 년도 주제선정에서부터 조사방식, 조사처리과정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사주기는 법령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조사주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전문연구자들과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조사주기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여성가족부와의 협조를 통해 법령개정을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조사주기를 법령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사주기를 법으로 규정해 놓는 것이 오히려 질 좋은 조사를 위한 선택과 개선방안추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전수조사의 적절성

1) 전수조사의 문제점

전수조사는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구성원을 조사함으로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그 조사방법의 특성 상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한다. 무엇보다도 목표모집단을 모두 측정함으로써 많은 조사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경우도 예산과 조사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조사대상의 특성상 일반조사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사원과 감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원, 감독자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가 조사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참여한 조사원과 슈퍼바이저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전문 조사원과 감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조사방식 및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슈퍼바이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경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담당할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조사의 질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수조사가 낮은 응답률을 보인다면 그 효과와 적절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실제로 2009년 실태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55.9%에 지나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표본조사를 실시해 전수조사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수조사의 경우 표본조사에 비해 오히려 응답오차가 커질 수 있다. 특정 집단군에서 응답을 거부하는 경향이 크다면 전수조사가 오히려 선택오차(selection bias)를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일례로 조사대상자의 응답률이 국적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전체 중국한국대상자 중 27%만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국년도와 응답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응답거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2) 표본조사로의 전환

전수조사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향후 다문화가족 조사는 표본조사를 그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 선결해야 하는 과제는 정확한 표집틀의 확보와 자료수집과정에 대한 엄정한 관리이다. 표본조사는 정확한 모집단 명부의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표본조사에 앞서 결혼이민자 모집단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모집단조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외국인 조사부분을 추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통계청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모집단 명부를 구축하여 제공한다면 결혼이민자 조사의 표본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서 한국사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수조사의 문제점이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품질진단을 통해 드러난 만큼 표본조사로 전환해야 한다.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일본이나 호주의 경우처럼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신규조사항목으로 결혼이민자의 국적과 입국시기가 포함되어 있어 기존의 인구학적 배경과 함께 결혼이민자의 모집단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표집틀로 삼아 한국의 다문화가족 특성을 반영한 표본을 설

계해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ampling 전문가, 조사방법론 전문가, 다문화가족 전문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표본조사를 실시하면 저소득층이나 입국 1-3년차 등 이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되었던 하위집단들을 적절히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다문화가족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수라 할 수 있는 국적, 거주지역, 입국시기 등을 기반으로 층화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측정의 정확성과 자료의 대표성 확보

1. 설문작성과정의 체계화

1) 문제점

유관 부처들이 협력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상이한 부처의 입장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조사표는 그 내용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변수의 수는 많으나 심층적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구성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문화가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배우자 정보와 같은 항목들이 누락되기도 하였다.

조사표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열 개의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설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미흡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조사표 확정 후 번역과 사전조사 과정에서 양질의 조사표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몇몇 설문은 교육수준이 낮은 외국인이 혼자 힘으로 응답하기에는 어렵게 작성되었다. 최종원자료를 분석해 한글조사표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한국어 읽기 실력을 살펴보니 “서툰 편이다.”와 “매우 서툴다.”가 평가한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 사실 이들이 한글 조사표를 얼마나 잘 이해했을지 의문이 든다.

2) 개선방안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협의해 조사표 작성 체계를 표준화시

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년도 주제선정에서부터 조사방식, 조사처리과정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기적 계획안에 의거해 조사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항목들을 미리 정하고, 각 조사별로 특화된 주제들을 선정해 조사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양질의 조사표를 구성하기 위해 전문가검토, 인지인터뷰, 사전조사, 반분 실험법 등 주제와 조사내용에 적합한 조사표 검토 작업을 선택해 실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니만큼 번역과정과 번역결과의 검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각 언어별 번역전문가의 육성도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2. 조사표 및 항목구성

향후 다문화가족 조사 시 필요한 조사영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진단팀이 시행한 두 차례의 FGI에 참여한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은 조사영역뿐 아니라 설문항목을 구성할 때에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1) 조사필요영역

① 필수조사영역: 배우자 정보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독립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수준, 수입, 연령 등의 인구학적 배경은 배우자 본인을 통해서 조사될 필요가 있다.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설문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②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조사항목

이민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이 필요하며 이는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민자,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반 한국인과는 다른 상황과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측면, 특수성을 발견하고 조사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민자에게는 모국과의 관계 및 교류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 본국에 얼마

나 자주 방문하는지,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본국의 부모나 가족성원이 한국을 방문하여 육아 등을 도와주거나 반대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본국의 부모에게 보내 일정기간 양육을 부탁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FGI의 전문 연구자들은 특히 송금의 문제를 강조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본국에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문화적으로 선호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에서의 삶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관공서 등을 방문할 때 누구와 동반하는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어떻게 일정부분 해소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③ 가족관계 및 갈등

가족관계 및 가족갈등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및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것으로써 세분화된 조사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자라는 지위의 특성상, 조사대상자들은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상호접촉이 결혼 전에 비해 줄어들고, 가족성원뿐 아니라 동료나 친구 등 기존에 본국에서 형성한 사회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서 새롭게 형성한 가족구성원은 결혼이민자에게 더 중요한 의미와 영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한국 내 가족 간의 관계 및 갈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가족갈등을 세분화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갈등의 대상이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시부모인지, 다른 가족성원인지를 구분하여 조사하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④ 문화적응도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조사표에는 한국어 읽기 및 쓰기 실력에 대한 자기평가 문항이 포함되었다. 언어수준을 이민자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은 이민자의 문화적응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적응도를 측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일례로 한국의 풍습이나 규범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문화적응도에 좀 더 객관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연구 중 이수범(2008)은 인천에 거주하는 화교의 문화 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한국어로 글쓰기를 더 잘한다', '주로 자국의 음악을 듣는다',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 '친한 친구들은 자국 사람들이다', '시를 쓸 때, 한국어로 쓴다', '자국 사람들의 모임을 더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린다', '자국 사람들이 나를 더 동등하게 해준다고 느낀다', '한국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한국 사람들에게 감정을 이야기하기 쉽다', '자국 사람들이 더 편하다', '한국 사람을 사귀는 게 더 편하다', '동료들은 한국 사람이다'의 13문항을 이용한 바 있다.

⑤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사회 내 한국인과의 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내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는지, 참여한다면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는지를 설문함으로써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 교류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⑥ 구체적인 복지 욕구

복지 욕구 및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복지서비스에 도움을 얼마나 받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부분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⑦ 취업에 대한 욕구

결혼이민자도 일반 한국인들처럼 취업에 대한 욕구와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한국인들과는 구분되는 어려움과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살았는가에 따라 취업에 대한 다양하고 변화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다. 보사연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을 가진 이민자가 72.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와 어려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⑧ 가구단위: 가구구성원조사

조사의 초점이 결혼이민자라는 개인단위가 아닌 다문화가족이라는 가구단위로 정해질 경우에는 상술한 조사항목들과 더불어 가구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항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인식도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측정하는 경우인 가구성원에 대한 정보, 가구총소득, 배우자정보, 자녀정보 등을 조사할 때는 결혼이민자보다는 배우자나 그 가구 내 한국인 가족성원에게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체류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나 가구총소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응답범주 및 항목 구성 방안

① 응답범주의 문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조사표의 문항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조사를 위한 항목구성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2009년 조사표가 갖는 문제 중 하나가 이민자들이 이해하고 스스로 기입하기에는 응답 코드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취업과 관련된 설문을 살펴보면, 응답자가 제시된 <보기>를 보고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GI에 참여한 전문연구자는 2009년 조사표는 소득수준의 응답 범주도 이민자의 생활실태에 비해 너무 넓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전제 자체는 편견일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21.3%, 100-200만원 미만이 38.4%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이 약 344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9). 가구소득의 정확한 소득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의 응답범주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연구자들과의 논의와 사전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의 실상을 반영한 응답범주가 필요하다. 국적이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남성의 경우 파키스탄이나 북미, 유럽에서 오는 경우도 많으나 질문지의 국적코드는 여성의 경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② 항목 구성

앞에서 논의한 조사필요영역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조사항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매 회 조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 성별, 연령, 입국시기, 결혼 전 국적 등 2009년 실태조사에서도 사용되었던 항목들과 더불어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구학적 배경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조사항목은 조사가 실시되는 해마다 주요주제를 선정하여 핵심질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조사표의 주요주제와 항목구성은 한국의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전문연구자들 간의 협의와 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장기 조사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조사 시기별 핵심조사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한국의 다른 설문조사에서 널리 쓰이는 설문구성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기 보다는 결혼이민자들의 현실에 부합하는 문항구성이 요구된다.

3. 조사원 교육

1) 문제점

조사원 교육은 슈퍼바이저(조사감독자) 교육과는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상이한 두 가지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는 조사원 교육이 면접방법 전략과 설문항목의 이해와 같은 실질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치중했음을 의미한다. 조사원 교육은 조사개요,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과 같은 해당 조사에 대한 소개와 조사원의 역할과 면접지침처럼 실제 면접조사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최종 조사표를 가지고 설문실습까지 해보는 것이 좋다. 이는 조사원의 문항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면접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력을 배양한다. 하지만 본 진단팀이 보사연에 의해 제출된 자료, 통계작성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검토해본 결과, 조사원 교육에서 설문문항의 이해와 면접진행과정 숙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진단팀의 현장점검에서 만난 거의 모든 슈퍼바이저들과 조사원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루어지기에 1시간이라는 시간은 너무 촉박했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말해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조사원 교육은 준비

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조사원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지고 조사원들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면접기록표>나 <미완료 설문 기록사항>과 같은 기본적인 문서들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응답자가 이해하기에 모호하거나 어려운 문항들에 대한 설명서도 조사원들에게 제시되지 않았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조사원 교육에서 배포된 조사표 설명은 해당 통계를 위해 따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보사연이 다른 사회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했던 것을 약간 수정한 수준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문항들에 대해서만 해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설문의 내용에 대한 조사원들의 이해 수준은 그들의 지적수준에 의해 달라졌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면접진행과정에서의 조사원의 특성에 의한 오차를 증폭시켜 자료의 품질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다. 조사원들 간 조사표에 대한 이해수준이 균일한 이상적 상태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 개선방안

① 조사원 교육시간

통계청이나 외국인 조사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조사원을 고용하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조사원 교육 준비를 보다 충실히 하고 교육시간도 현행 1-2시간보다는 훨씬 더 길어야 한다. <표 4-1>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조사인 한국종합사회조사⁹⁾(Korean General Social Survey)의 조사원 교육 일정표이다. 표에서 잘 드러나 있는 것처럼, KGSS의 조사원 교육은 1박 2일 동안 전국의 250명 조사원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진행되었다. 그 교육내용도 조사에 대한 소개, 면접지침, 설문설명, 면접시범 동영상 상영, 실습 및 토론, 행정적 절차 등이 모두 포괄하고 있어 조사원이

9)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표본조사로서, 한국인의 주요 가치 및 태도, 속성, 행동 방식, 일상생활 양태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이 조사는 한국사회의 구조와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고, 여러 주요 문제에 대한 국제 비교를 가능케 하는 양질의 사회과학 기초 자료를 창출해서 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GSS의 표본은 ‘전국의 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해서 다단계지역집락표본추출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으로 추출되며, 현지조사(fielding)는 전국의 표본 가구들을 200여명 이상의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심층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표는 매년 반복해서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모듈,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4개국의 조사연구기관들이 공동 개발하여 격년 주기로 조사하는 EASS(East Asian Social Surveys)의 주제모듈, 그리고 SRC의 특별주제모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다.

교육을 받고 곧바로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사회조사
의 조사원 교육이 KGSS처럼 꼼꼼하게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들은 다루어야 한다.

<표 4-1>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조사원 교육 일정표

일 시	소요시간	내 용	담 당	
6/25 (금)	9:30	2시간 30분	차량이동	
	12:30 - 13:30	1시간	연수원 집결 & 점심식사	12시30분 집결
	13:30 - 14:00	30분	등록 및 교육도구 배분	
	14:00 - 14:20	20분	1) 인사말 및 학교인사	○○○ 교수님
	14:20 - 14:30	20분	2) KGSS 소개	○○○ 교수님
	14:30 - 15:20	50분	3) 조사원 면접지침	○○○ 교수님
	15:20 - 15:35	15분	휴식	
	15:35 - 16:35	1시간	4) 설문모듈1(반복핵심)	○○○ 교수님
	16:35 - 16:50	15분	휴식	
	16:50 - 17:30	40분	5) 설문모듈2(ISSP-사회불평등)	○○○ 교수님
	17:30 - 18:00	30분	6) 설문모듈3(특별주제-공정성)	○○○ 교수님
	18:00 - 18:20	20분	7) 설문모듈4(정신건강과 자살)	○○○ 교수님
	18:20 - 19:00	40분	8) 면접시범 동영상 상영	○○○ 조 교
	19:00 - 20:00	1시간	저녁식사 및 방배정	
20:00 - 21:00	1시간	9) 소그룹 면접실습		
21:00 - 22:00	1시간	10) 뒷풀이		
6/26 (토)	7:40 - 9:00	1시간 20분	아침식사	
	9:00 - 10:30	1시간 30분	1) 소그룹 토의 / 현지조사계획	
	10:30 - 11:00	30분	2) 평가 및 질의	○○○ 교수님
	11:00 - 11:30	30분	3) 일정 공지 및 조사팀장/조사원 역할 설명	○○○ 조 교 ○○○ 조 교
	11:30 - 12:00	30분	4) 조사도구 점검 및 퇴실준비	○○○ 조 교
	12:00 - 13:00	1시간	점심식사	
	13:30	-	차량이동	

② 교육자료집 및 면접원지침서

조사원이 면접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면접지침서를 준비해야 한다. 면접원지침서는 조사원들에게 그들이 설문 기간 동안 겪을 수 있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대처요령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특히 전국다문화

가족실태조사처럼 응답자와 접촉하기 어렵고 응답거부율이 높으며 복잡한 조사표로 진행되는 조사에서 더욱 그렇다. 여기에는 조사대상자 접촉 및 설득 방법, 상황별 대처요령 및 유의사항, 조사내용에 대한 설명 등이 망라되어야 한다. 희망근로자, 방문교육지도사, 통반장 등 조사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다양한 만큼 이로 인한 비표본 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구 중의 하나가 교육자료집과 면접원지침서이다.

4. 자료수집과정 관리

1) 문제점

짧은 준비기간, 형식적인 조사원 교육, 중앙기관과 지방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부재는 부실한 자료수집과정 관리로 이어졌다. 위에서 이미 현지조사에서 발생한 상황들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문제점들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조사조직 관리를 위한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대규모 사회조사의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기초적인 기록들인 지역별(시군구) 조사상황 기록표, 슈퍼바이저별 조사원관리표, 조사원별 응답현황표가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면접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다. 보사연이 제출한 자료에는 조사원이 표본별로 면접상황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는 문서나 조사완료에 실패한 이유를 기록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 셋째, 조사원의 허위보고에 의한 오류를 점검할만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사회조사에서 발생하는 허위보고에 의한 오류의 문제는 조사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심각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조사완료 조사표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확인과정을 반드시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사연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본 진단팀이 현장점검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각 조사구의 조사감독자들이 우연히 발견된 허위보고 표본들을 자의적으로 제거해 조사실패 또는 단위무응답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자료처리과정에서도 완료 조사표에 대한 적절한 검표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개선방안

면접진행상황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다른 사회조사의 예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자료수집과정 관리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소들이 누락됨으로써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림 4-2>는 KGSS가 조사원들에게 작성을 요구하는 가구방문 기록표이다. 조사원들은 가구의 방문기록과 그 결과를 상세히 적도록 되어있다. 설문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이유도 적도록 하고 있다. KGSS가 응답거부로 판명하는 기준은 10번 방문을 해 조사대상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경우이다. 접촉불가로 분류되는 기준은 요일과 시간을 달리해 10번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이다.

<그림 4-2>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가구방문 기록표(예시)

표본 가구 방문기록					
* 완료하였을 경우 ○표 하십시오.					
횟수	방문 일시	완료 여부	미완료 이유		재방문 예정 일시
1	6 월 28 일 월요일 5 시 (오전/○후)	미완료	방문을 했으나 아무도 없었음	<input type="checkbox"/>	7 월 1 일 목요일 7 시 (오전/○후)
2	7 월 1 일 목요일 7 시 (오전/○후)	미완료	응답대상자가 재방문을 요청함	<input type="checkbox"/>	7 월 3 일 토요일 11 시 (오전/○후)
3	7 월 3 일 토요일 11 시 (○전/오후)	미완료	응답대상자가 외출함	<input type="checkbox"/>	7 월 5 일 월요일 7 시 (오전/○후)
4	7 월 5 일 월요일 7 시 (오전/○후)	완료	완료	<input type="checkbox"/>	__ 월 __ 일 __요일 __ 시 (오전/○후)

<그림 4-3>은 KGSS가 사용하는 조사원이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표본에 대해서 기록해야 하는 조사원기록사항이다. 여기에는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를 적도록 되어있다. 만약 조사대상자를 접촉했거나 다른 가구원을 통해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정보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조사에서 설문에 대한 응답 허락과 거부가 분기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검표와 보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감독자는 항상 허위보고에 신경써야 하면 완료된 조사표를 받았을 때 간단히 검표를 진행해야 한다. 응답이 빠진 문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빠진 문항이 있는 경우 재방문을 통해 즉시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4-3> 한국종합사회조사의 미완료 설문에 대한 조사원 기록사항(예시)

《미완료 설문에 대한 조사원 기록사항》

※ 다음은 설문을 완료하지 못한 응답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대상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악하고, 응답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즉시, 그리고 최대한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용 양도항 경우, 설문양도에 체크하시고,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_____ 설문 완료

1. 설문을 완료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응답대상가구와 접촉할 수 없었다(경비의 체계 등) <input type="checkbox"/> ② 응답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③ 응답대상자는 확인하였으나 응답대상자가 거절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대상자는 확인하였으나 응답대상자 외 가구원이 거절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⑤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면접이 불가능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⑥ 빈집이거나 응답대상자가 장기 출타중이었다 <input type="checkbox"/> (7) 기타 (무엇: _____) } (문항 1.1로 가시오)
---	--

(응답대상자를 확인하였다면)

1.1 응답대상자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1.2 응답대상자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정확한 연령을 모를 경우, 보기에서 해당되는 연령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_____ 세

<input type="checkbox"/> ① 20대(18~19세 포함)	<input type="checkbox"/> ③ 40대	<input type="checkbox"/> ⑤ 60대	<input type="checkbox"/> ⑦ 80대 이상
<input type="checkbox"/> ② 30대	<input type="checkbox"/> ④ 50대	<input type="checkbox"/> ⑥ 70대	<input type="checkbox"/> ⑧ <u>모르겠다</u>

종합해서, 자료수집과정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 기관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기관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식으로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사원 및 감독자 관리가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 조사원의 구성도 조사전문인력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조사결과보고서: 조사결과보고서의 문제와 향후 개선안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자료에 나타난 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응답자 특성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은 앞에서 논의한 조사자료 오류 점검 부분에 일부분 서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내용 중 보완되어야 할 만한 부분을 몇 가지만 논의하고자 한다.

1) 조사과정에 대한 논의

먼저,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읽는 사람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조사원 구성 및 조사방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특히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응답자 명단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최초 명단에는 약 16만명의 기록이 있었으나 실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에 약 14만 정도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조사결과보고서에는 행정안전부의 명단과 현 조사자료가 기준으로 삼은 15만의 모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조사과정 중 명단 수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다.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초 목표모집단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167,090명으로 이는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한 수이다. 이 167,090명에서 실태조사의 모집단이 되는 154,333가구가 구성되었고,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결혼이민자보다 넓은 범주를 포함하는데 행정안전부의 명부가 어떠한 기준과 과정에 의해 축소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조사원 모집이나 구성, 협조한 관련 기관(다문화센터 및 지자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조사원 구성과 지역별로 협조한 기관에 따라 응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가 조사자료 분석 및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가중치 산출방법 및 근거

가중치 산출방법과 근거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전수조사였으며 전수조사에 가중치를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FGI에 참여한 여러 전문연구자들의 의견이었다. 조사결과보고서에는 가중치 사용의 필요성 혹은 적합성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산출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없다. 특히 국적별로 응답률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가중치를 이용하여 목표모집단(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대상가구 131,702가구)의 규모에 맞출 경우 생길 수 있는 오류가능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조사결과보고서가 밝힌 국적 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률 55.9%에 비해 중국 한족이 27%로 최하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베트남은 75.5%를 나타내 그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한족의 경우는 전체 다문화가족 131,702가구 중 35,914가구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사용하여 국적 별 규모를 보정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결과들이 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가중치 산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더욱 중요하다. 최소한 조사결과보고서에는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통계치와 사용 후 통계치 간 차이가 고려할 만한 수준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3) 조사의 한계

조사자료의 특성상 자료이용자들의 이용과 해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모든 조사자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자료이용자 및 독자들의 잘못된 자료이용 및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조사자료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일례로 FGI에서 지적되었듯이, 응답자가 다문화가족 중 주로 상층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 및 한계점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2009년 조사에서는 조사원 구성과 관련 협조기관이 지역 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조사자료의 질과 응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조사과정 및 조사내용 상의 한계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제시된 개선방향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통계품질을 저하하는 요인들의 대부분은 예산과 시간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사실 지난해 조사에 투입된 예산과 시간으로 16만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정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가령 위에서 예로 들었던 KGSS의 경우 매년 2500 표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지조사비용만으로 조사표 한 부당 약 15-20 만원을 투자하며, 한 번의 현지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약 6개월 동안 집중적인 준비를 한다. 사회조사의 비용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예산을 확보해야 한

다.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에 비해 조사원 교육, 조사표 번역, 각 국가별 의사소통 가능한 통역사 혹은 조사원 고용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표 5-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구분	문제점	개선과제	실행방법	기대효과
통계 작성 담당자의 통계품질관리에 대한 인식	행정적 및 형식적 조사관리로 인한 관행적 오류의 반복	조사기획부터 자료수집 및 공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세부지침과 문서 마련	조사과정을 세분화하여 각 단계마다 표준화된 관리 및 점검 체계 마련	-표본오차 및 비표본오차 최소화 -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조사기획	전수조사로 인한 오류와 부정확한 표집률 사용 심층조사가 불가능한 3년 주기의 실태조사	-표본조사 고려 필요 -정확한 표집률 구축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와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 현황조사자료를 활용한 정확한 표집률 구축과 표본대체 없는 표본조사 실시 또한, 매년 모집단 정비 필요	-시간과 비용 대비 저효율성이 높은 전수조사의 문제 해결 -과소대표되기 쉬운 소수국적이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과대표집을 통한 심층적 연구 가능
조사표 작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의 조사로 인한 편향가능성 -여러 주제들의 나열식 구성으로 인한 심층연구의 어려움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문항	1-2년 주기로 출일 필요 있음 다문화센터중심조사가 다문화 가족의 사회계층별 응답률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매 회의 조사에 공통으로 묻는 반복핵심문항, 당해연도 주제모듈, 당해연도 광역단체모듈로 장기계획 수립하여 5 년마다 주제별 순환조사	전국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 및 시계열적 연구 가능
조사표 작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의 조사로 인한 편향가능성 -여러 주제들의 나열식 구성으로 인한 심층연구의 어려움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문항	다문화센터중심조사가 다문화 가족의 사회계층별 응답률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	응답오차(selection bias) 감소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문항의 개발

	<p>-조사표변역과정에서 조사표 변역의 감수 및 역변역 미실행 -형식적인 사전조사</p>	<p>-전문성을 보유한 조사표 변역 체계 마련 -철저한 사전조사 계획과 정확한 결과의 반영</p>	<p>-조사표 변역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임하고 한 번의 변역과 감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감수과정이 필요함 -역변역 실행 -실질적인 사전조사로 정확하지 않은 변역을 확인.</p>	<p>정확한 조사표 변역은 비표본오차(측정오차 및 처리오차)의 가능성을 줄임</p>
	<p>조사원 교육의 비 체계성</p>	<p>-짧은 교육시간 -조사내용, 대상자 접근방법, 면접지침 등에 대한 불충분한 교육 내실화</p>	<p>외국인 조사 경험을 축적하고 있거나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갖춘 조사기관에 의뢰</p>	<p>조사원에게 충분한 교육과 동기부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료의 질을 향상</p>
현장조사	<p>조사자료 관리</p>	<p>-문서나 자료관리의 비체계성 개선 -조사원기제사항의 자료화</p>	<p>-슈퍼바이저별 조사원 관리 현황 수시 파악 -조사원별 조사 현황 파악 -미완료설문에 대한 기록표 -조사원 면접 진행기록표 작성 의무화</p>	<p>현지조사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조사자료의 질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높힐 수 있음</p>
	<p>조사원 선정기준 마련</p>	<p>통반장, 방문교육지도사, 외국인 등, 조사원의 구성이 조사지역별로 다름</p>	<p>-전문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 -조사원 고용과 관리를 일원화</p>	<p>조사원 특성에 의한 오차 최소화</p>
예산	<p>예산의 비현실성</p>	<p>예산의 현실화</p>	<p>-조사비용에 대한 인식전환 -결혼이민자 조사의 어려움을 고려한 예산 책정이 필요</p>	<p>자료의 질 향상</p>
사후관리	<p>조사원 기록사항 부재</p>	<p>13만 1천여명에 대한 조사원 기록사항 복원</p>	<p>-보사연에서 실태조사 결과 파악한 자료 복원</p>	<p>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와의 검증 및 모집단 구축에 활용</p>

제 5 장 결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로드맵

제 1 절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로드맵

지금까지 본 진단팀은 보사연 통계 작성 담당자와의 면담, 전문가 FGI, 지역 현장점검, 여성가족부 및 보사연 제출자료 검토, 원시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2009년에 수행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대한 품질진단을 수행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로드맵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하에 작성되었다. 첫째, 앞에서 계속 지적한 것처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전수조사보다는 정확한 표본조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현황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표가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별로 다문화가족의 분포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표가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3년보다는 1년 또는 2년 주기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복지 및 정책 육구의 파악과 정책 실행의 효과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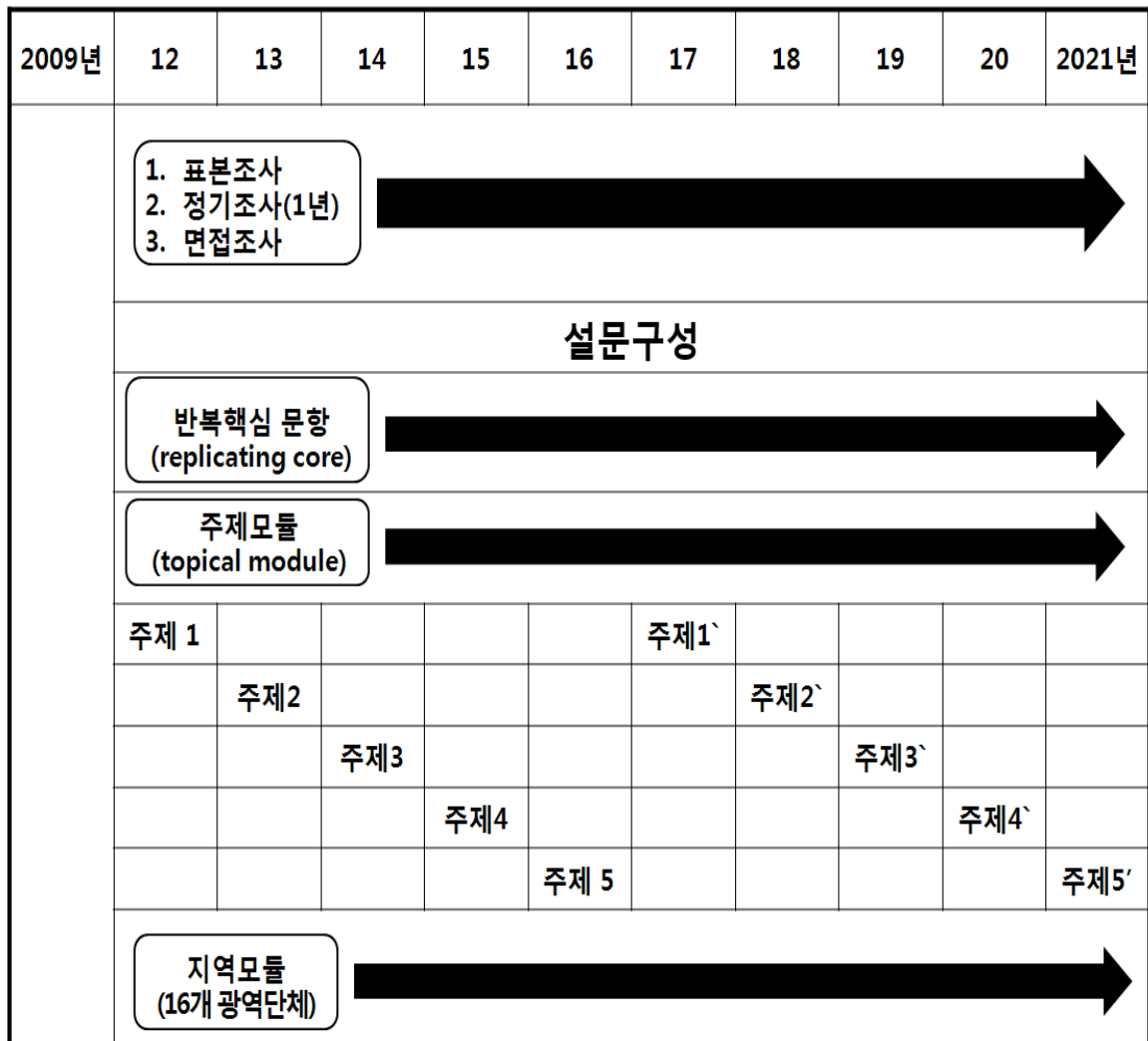
<그림 5-1>은 본 진단팀이 설계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10년 로드맵의 개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의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정확한 표본추출을 통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조사표는 반복핵심문항(replicating core), 주제모듈, 지역모듈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반복핵심문항에는 위에서 기술한 다문화가족조사에 필수적인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제모듈은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정책의 수립을 위해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자녀양육이나 사회참여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정 주제 문항들은 5년을 주기로 반복되어 조사됨으로써 기초자료 활용을 통한 복지육구 파악 및 정책 수립과 정책 실행의 효과 검증을 가능케 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¹⁰⁾ 지방광역단체가 지정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모듈도 주제모듈과 마찬가지로 구성되고 조사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정책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효과 검증에 기여할 수

10) 조사주기를 2년으로 정했을 경우 특정 주제에 대한 모듈은 10년에 한 번씩 조사된다.

있을 것이다. 본 진단팀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일회성에 그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의 로드맵과 다문화가족연구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추가적인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결혼이민자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가정, 외국인 노동자가정 등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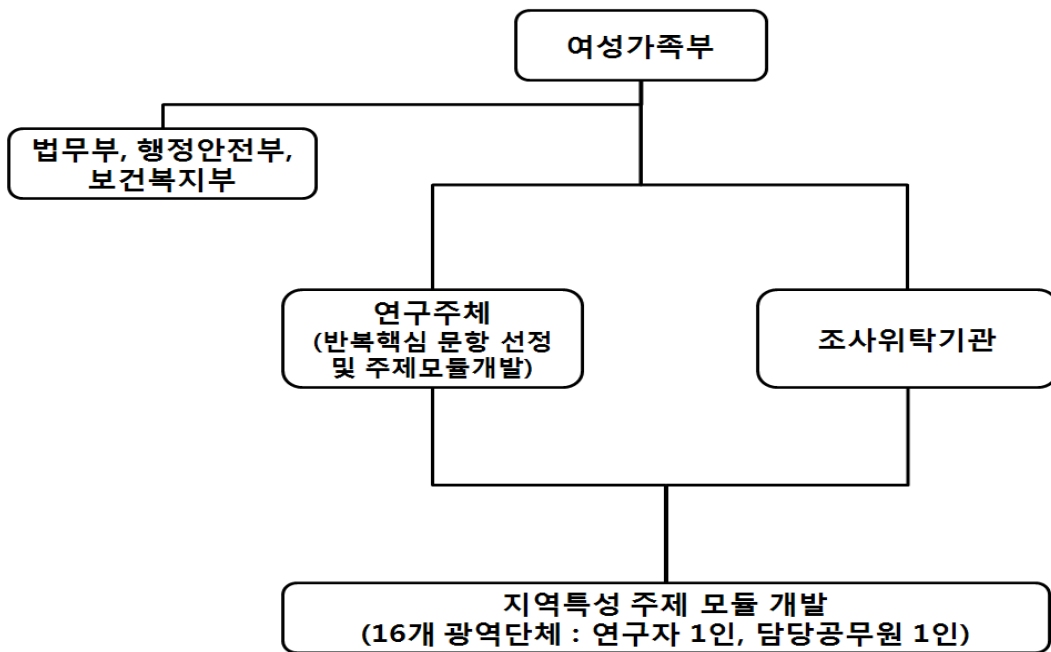
<그림 5-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로드맵



아울러 본 진단팀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사업의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를 여성가족부가 주도하여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5-2>는 전국다문

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조직도 이다.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다른 유관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 조직에는 네 개의 유관부처, 조사위탁기관, 연구주체, 그리고 16개 시도의 지역특성 주제 모듈 개발팀이 포함된다.

<그림 5-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조직도



제 2 절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대상 조사에서의 유의사항

본 진단팀은 마지막으로 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표본설계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는 그 특성상 모집단 명부의 구축이 쉽지 않다. 거주지 이동이 직장의 변경에 따라 잦기 때문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따라서 표본설계를 고민하기 이전에 정확한 모집단 명부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행정안전부의 모집단 자료 및 다문화지원센터와 행정력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으면 표본추출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표본조사는 확률표집에 근거하기 보다는 국적, 연령, 거주지역, 자녀유무 등을 기준으로 목표 완료 표본 수를 설정하고 이를 채워가는 할당표집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사회인구학적 분포를 알려진 모집단 분포와 일치시켜주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통계적인 임의표집으로 확률표집이 아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별 사회인구학적 분포에 의한 층화표집법과 지역집락확률표집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조사대상자의 거주지 및 인구학적 특성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오차를 수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표본설계와 표본조사의 성패는 정확한 모집단 명부의 구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진단팀은 전국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인구의 명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을 제안한다.

잦은 이동으로 인한 모집단 명부 부정확성을 초래하는 집단들은 대개 저소득층이거나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일 가능성이 높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3년 미만 거주자의 응답 거부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완료율을 높이는데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한족의 응답률이 매우 낮았다.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표본설계 시에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필요하다면 체계적으로 누락되거나 과소대표될 위험이 큰 하위집단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의 표본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조사표번역

조사표 번역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번역은 한 두번의 작업과 감수만으로 충분히 완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번역의 문제는 예산뿐 아니라 번역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번역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고 철저한 감수와 역번역이 필요하다. 만약 역번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감수자를 구해 번역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전조사

많은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들이 사전조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 대상 조사이기 때문에 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외국인 대상 사전조사는 한국인 대상 사전조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조사원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반드시 사전조사 상황을 관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전문연구자와 외국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통한 감독자가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전조사에서 응답자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행동코딩(behavior coding)과 인지적인 인터뷰(cognitive interview)의 방식을 결합한 형태이다. 이를 통해 응답자가 각 항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 특정 응답을 했는가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현지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한글 조사표에 응답한 23,000여명의 응답자들 중에서 한국어 읽기 실력을 살펴보니 서툰 편이다와 매우 서툴다가 평가한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 응답자가 한글 조사표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한글 조사표 사용에 주의가 요

구된다. 궁극적으로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보다는 면접식 설문조사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는 물론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5. 조사홍보

먼저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조사 전에 조사시행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사전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조사원들의 지적이 많았다. 조사에 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하며 조사대상에 대한 접근방법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사원 교육이 필요하다.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조사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모국어를 할 수 있는 조사원을 이용한 접근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6. 면접방법

면접방법은 자기기입식 조사보다는 면접식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사원 현장점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경우 남편이 대신 응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모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면접식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비표본 오차 최소화 방안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관리가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 2009년 실태조사의 경우 다문화센터와 일선 지자체 감독하에 조사원은 희망근로자, 방문교육지도사, 통반장 등 다양하였다. 조사원과 감독자 구성이 다양한 만큼 이로 인한 비표본 오차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독자가 얼마나 조사의 의의에 동감하고 협조하느냐에 따라 조사원교육과 관리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의 구성을 조사 전문인력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조사원 교육과 관리

외국인 대상 조사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편이므로 조사원 교육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사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료집, 면접지침서, 조사원 면접상황기록표, 미완료설문에 대한 조사원 기록 등과 같은 문서를 미리 제공하여 설문내용을 숙지하게 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여유 있게 대처하며,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관리자는 지역별 조사 감독자에게 매주 보고를 받고, 지역별 조사 감독자는 조사원들의 진행상황을 매주 확인할 수 있는 규칙을 명문화해 놓아야 한다.

9. 예산

조사대상자가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에 비해 조사원 교육, 조사표번역, 각 국가별 의사소통 가능한 통역사 혹은 조사원 고용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이수범. 2008. “인천 화교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 『인천학연구』 9: 63-88.
- 이혜경 외. 『2009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도 측정: 다문화가족 사회통합도 측정』. 2009. 법무부 용역보고서
- 김승권 외.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09. 보사연
- 통계청. 2007.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2009. 인구동태통계연보
- 통계청. 2009. 한국의 사회지표
- Groves et al. 『Survey Methodology』. 2007. Wiley.